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3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45호 2007. 1. 11.(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규 칙]

- 제3524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제3525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제3526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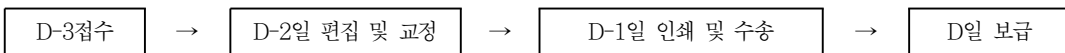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3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3527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	--	---

◆고 시

제2007-	2호	버스전용차로 폐지·강화·운영시간변경(토요일)	7
제2007-	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11
제2007-	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13
제2007-	5호,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39
제2007-	7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64

◆공 고

제2006-1896호,1897호,1898호,189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65	
제2007-	1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안	67
제2007-	9호,23호,43호,45호,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71
제2007-	1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78
제2007-	17호	마을버스 노선(관악09번) 폐지	79
제2007-	20호,22호,44호,46호,5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79
제2007-	24호,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85
제2007-	3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87
제2007-	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87
제2007-	36호	서울 장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87
제2007-	39호	대부업자 소재지 확인	89
제2007-	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97
제2007-	47호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98
제2007-	5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99
제2007-	53호,55호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	99
제2007-	5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101
제2007-	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102
제2007-	82호	2007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	103

◆구 고 시

제2007-	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중구)	105
제2007-	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동대문구)	106
제2007-	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성북구)	106
제2007-	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서대문구)	107
제2007-	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경미한 변경(강서구)	108
제2007-	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강서구)	109
제2007-	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영등포구)	110

제2007- 2호	장미연립재건축조합사업 공사완료(동작구)	111
제2007- 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강동구)	111

◆구공고

제2007-10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종로구)	112
제2007- 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동대문구)	116
제2007- 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중랑구)	117
제2007-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중랑구)	120
제2007- 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최대개발규모) (변경)결정(안) 재열람(도봉구)	121
제2007-11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수정가결에 따른 공람(도봉제2구역)(도봉구)	122
제2007-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도봉구)	125
제2007-1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서대문구)	125
제2007-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양천구)	126

◆사업소고시

제2007-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127
--	----------------------	-----

◆사업소공고

제2007- 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종로소방서)	131
제2007- 2호	소방시설업 등록(종로소방서)	132
제2007- 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동대문소방서)	132
제2007- 1호	소방시설업 등록(은평소방서)	133
제2007- 1호	소방시설업 등록(강남소방서)	133
제2007- 1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133

◆기 타

제2007- 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4
-----------	-----------------------------------	-----

◆정 정	135
------	-------	-----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4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간사장 및 간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간사장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사장 : 법무담당관
- 2. 간사 : 행정심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제1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이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증원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심판2팀 신설(2006.9.18)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 “지명위원”중 ‘복지건강국장’, ‘산업국장’을 삭제하여 외부 ‘위촉위원’

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제2조제2항)나. 행정심판2팀 신설에 따라 행정심판1팀장 외에 행정심판2팀장도 간사역할을 수행토록 함(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5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조1호중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삭제한다.

제7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각호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입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착수금은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26조2 규정에 의한 소송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요소송 사건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착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되, 필요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당시 소송수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 행정에 영향이 큰 중요소송 사건의 착수금 인상으로 적극적인 소송대리를 유도하고, 「소송사무 처리규칙」의 적용대상에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도 포함 시키고, 그 밖에 현행규정 및 체계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요소송의 경우 특별사례금외에 특별착수금을 신설하여 중요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조정 함(제26조제2항)
 - 중요소송의 착수금을 현재 5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 나. 「소송사무 처리규칙」 적용대상인 행정소송에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명시(제2조)
- 다. 업무처리절차 변경(송무용전 전산화)에 따른 별지서식 삭제(제5조2항)
- 라. 불필요한 조항 일부내용 삭제(제31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6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이 정한 입원허가신청서와”와 동 조제2항중 “제1항의 입원허가신청서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환자면회는”을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립병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원허가신청서”와 “입원서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원허가신청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입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7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조례”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3항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경영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조례 제34조”를 “「서울특별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과의 경영계약 근거규정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 의장이 되는 비상임 당연직이사를 관련 규정의 개정 따라 “정책기획관”에서 “경영기획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호
 버스전용차로 폐지·강화·운영시간변경
 (토요일)
 버스전용차로개선과 관련하여 가로변 버
 스전용차로 폐지 및 강화와 운영시간변경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버스 전용차로의 변경시행을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버스전용차로 폐지 고시

도로구분	구 간	가 로 명	연장(km)	전용차로 종류	폐 지 일	비고
일반도로	교통안전공단입구3~부천시계	경인로(양방향)	1.5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07.1.10부터	
"	삼릉공원4~코엑스4	봉은사로(양방향)	1.6	"	"	
"	안세병원 4~영동대교남단	도산대로(양방향)	2.3	"	"	

나. 버스전용차로 강화 고시

도로 구분	구 간	가 로 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류	기 간	운영시간	
						종 전	변 경
일반도로	봉천4~승실대3	관악로(양방향)	2.0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07.1.11부터	시간제	전일제

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변경 고시(토요일)

도로 구분	구 간	가 로 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류	기 간	운 영 시 간	
						종 전	변 경
일반 도로	한양APT4~한남대교남단	압구정로(양방향)	2.5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07.1.11부터	07:00~15:00(8시간)	07:00~10:00(3시간)
일반 도로	광교R~서울역R	남대문로(양방향)	2.0	"	"	"	"

라.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2007년 1월 현재)

전 일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왕 산 로	동대문R~청량리R	3.3	'93. 2
동작대로	이수교~과천시계	4.8	'93. 2
의 주 로	녹번역3~서대문R	4.8	'93. 8
신 촌 로	신촌R~아현고가	2.0	'93. 8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공 항 로	발산역4~양화교	3.9	'93. 8
현 충 로	한강대교남단~이수교	2.5	'93. 8
신반포로	이수교차로~논현역4	3.6	
노량진로	대방역3~한강대교남단	3.1	
종 로	세종로4~동대문R	2.8	'94. 5
새문안길	서대문R~세종로4	1.1	
퇴 계 로	서울역R~광희동4	3.2	'94. 5
성 산 로	성산1교~사천고가	1.5	'94. 5
한 남 로	한남5 → 한남초교	0.6	'94. 5
노량진로	영등포R~대방역3	1.1	'94. 8
망 우 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94. 8
	망우역4~구리시계	2.1	'94. 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염곡4	1.0	'94.12
양 화 로	합정R~신촌R	2.6	'94.12
남대문로	광교R~서울역R	2.0	'95. 4('07. 1 토요일운영시간변경)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반포IC	1.3	'95. 4
양 평 로	양평동4~영등포전화국4	1.5	'95. 4
압구정로	한양APT4~한남대교남단	2.5	'95. 4('07. 1 토요일운영시간변경)
남부순환로	시흥IC~까치고개	7.3	'95. 4
화 곡 로	강서구청입구4~화곡역4	1.9	'95. 5
은 평 로	서부세무서~녹번역3	0.7	'95. 5
올림픽로	삼성4~잠실역4	3.3	'95. 5
송파대로	잠실역4~성남시계	6.3	'96. 8
대 학 로	이화R → 혜화R	1.5	'96. 8
	종로4가 → 이화R	0.6	'03. 7
하 정 로	동천교4~신답철교	0.9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혜화R	0.5	'03. 7
관 악 로	봉천4~승실대3	2.0	'98. 2('07.1 전일제 변경)
소 계	29개 구간	77.4	-

시 간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왕십리길	한양공고앞4~성동교북단	3.4	'93. 8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여의교	1.0	'94.8('00.2 시간제 변경)
현 룡 로	염곡4~내곡IC	2.9	'95.4('00.2 시간제 변경)
고산자로	고산자교남단~왕십리R	1.2	'95.4('00.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재물포길	2.3	'95.4('00.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을지병원4	2.0	'95.4('98.9 시간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오목교	2.5	'95. 5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삼성역4	2.0	'95.5('00.2 시간제 변경)
	삼성역4~학여울역4	1.5	'96.8('00.2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양원초교앞	1.5	'96.8('03.2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남영역	2.7	'96.8('00.2 시간제 변경)
만리재길	서부역~공덕R	2.0	'96.8('03.2 시간제 변경)
동 일 로	수락파출소~망우로	10.2	'96.8('98.9 시간제 변경)
통 일 로	녹번역3~구과발역3	4.6	'96.8('00.2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학여울역4	3.7	'96.8('00.2 시간제 변경)
효 령 로	지하철공사앞3~서초3동4	2.5	'96.8('98.2 시간제 변경)
공 항 로	발산역4~공항입구	2.8	'96.8('00.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화곡역4	2.1	'96.8('98.9 시간제 변경)
천호대로	천호4~방아다리4	2.7	'98.2('00.2 구간축소)
둔 촌 로	길동4~둔촌4	1.4	'98. 2
도산대로	신사역 4~안세병원 4	0.9	'98.2('07.1 구간축소)
관 약 로	봉천4~승실대3	2.0	'98. 2
종 암 로	종암경찰서~고대입구3	1.3	'99.12
풍 납 로	천호4~송파구청4	3.0	'99.12
소 계	23개 구간	62.2	-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천호대로	신답R~아차산역남측3	4.5	'96. 2
	신답철교~신답R	1.4	'03. 7
하 정 로	신설동R←신답철교	1.7	'03. 7
	용두역(동대문구청역)→신답철교	(0.3)	'05. 9
삼 일 로	퇴계로2가~종로2가	1.0	'04. 5
도 봉 로	의정부시계~미아4	10.0	'04. 7
미 아 로	미아4~혜화R	4.0	'04. 7
창경궁로	혜화R→원남4	1.3	'04. 7
강남대로	신사역4~영동1교남단	4.8	'04. 7
수 색 로	고양시계~사천교	3.9	'04. 7
성 산 로	사천교~이대후문	2.9	'04. 7
경 인 로	영등포R~오류IC	4.4	'05. 7
망 우 로	망우역4→청량리R	4.9	'05. 7
	시조사3→망우역4	(3.3)	'05. 7
시흥대로	대림3~기아대교앞	6.5	'05.12
대 방 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대림3	2.5	'05.12
마 포 로	마포구 마포동 마포대교북단~ 서대문구 충정로동 충정로삼거리	3.4	'06.12
한 강 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노들섬~ 용산구 남영동 서울역남단	4.1	'06.12
소 계	15개 구간	61.3	-

※ ()는 동일노선의 중복구간으로 소계거리에서 제외.

기타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서초IC	2.6	'04. 7
소 계	1개구간	2.6	-

마. 전체구간 (2007년 1월 현재)

총 계	68개구간	203.5km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시설반 전용차로 | 랍니다.
2팀(☎ 3707-8176)으로 문의하시기 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등)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3조(지정문화재)·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

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지정내용

지정종별(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재질	조성연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19호)	‘무인’ 명 청동 소종 (‘戊寅’ 銘 靑銅 小鐘)	1점	청동	고려시대 (13세기)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707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707 성보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20호)	청동 범종 (靑銅 梵鐘)	1점	청동	고려시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73-1 한빛문화재단 (화정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73-1 한빛문화재단	

2. 문화재 지정사유

□ ‘무인’ 명 청동 소종(‘戊寅’ 銘 靑銅 小鐘)
 이 범종은 고려시대의 청동범종(靑銅梵鐘)으로, 종신(鐘身)에 새겨진 명문으로 볼 때 13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높이가 25cm, 종구(鐘口)의 넓이가 15cm로 고려후기에 유행한, 선종사찰에서 사용하던 범종으로 추정된다.

용뉴(龍鈕)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한 발은 뒤로 짚고 있는 단룡(單龍)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입을 벌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용의 몸 뒤쪽에는 아무 장식 없이 간략화 된 음통(音筒)이 붙어있다. 천판(天板)에는 두 군데에 주조공(鑄造孔)이 남아있으며 가장자리에 죽 돌아가며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둘러져 있으나, 매우 형식화되었다. 입상화문대는 고려후반기 중에서 나타나는 천판 위의 장식으로, 보통 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장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위가 솟은 오각형의 꽃잎모양을 하고 있으며, 안에는 둥근 자방(子房)을 배치하고 사방에 방사선의 선을 조각한 것으로 보아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판에 이어져 있는 상대(上帶)에는 연당초문(蓮唐草

文)이 성글게 표현되었으며, 상대 아래에는 상대에 붙여 4개의 유곽(乳廓)을 표현하였다. 유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조금 넓은 사다리꼴 모양인데, 가장자리를 간략한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하고 안에는 9개의 유두(乳頭)를 배치하였다. 유곽 아래에는 2구의 상(像)과 당좌(撞座) 2개를 교대로 배치하였다. 2구의 상(像)은 앞뒤에 조각되었는데 합장을 하고 두 다리를 교차하여 구름 위에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가운데 부분이 높이 솟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이목구비(耳目口鼻)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당좌 역시 앞, 뒤 2면에 걸쳐 조각되었는데, 자방(子房)이 큼직하고 7엽 사이에 간엽(間葉)이 표현된 전형적인 고려의 연화문당좌(蓮花文撞座)이다. 하대(下帶)는 포도당초문(葡萄唐草文)을 성글게 조각하였다.

한편, 종신(鐘身)에는 40여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공주(公州) 기연원(祇淵院)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소종(小鐘)을 만든다는 것으로, 총 6근(斤)이 들었으며 무인년(戊寅年) 10월에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소종상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公州地祇淵院/

懸於小鍾同心/
 造成者香軀/
 慶元大明□之等/
 如願成就□□入/
 重六斤 匠人/
 朗鑿戊寅十月日

이 작은 종은 간략하고 형식화된 형식의 소종이지만 고려 후반기인 1278년 내지 1338년경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문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시대 중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청동 범종(靑銅 梵鐘)

이 범종은 고려시대의 청동 범종(靑銅 梵鐘)으로, 전체높이가 45cm에 달한다. 전체적인 형상은 우리나라 범종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 배 부분이 가장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천판(天板)에는 용鈕(龍鈕)와 음통(音筒)이 있으며, 주조공(鑄造孔)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멍을 메운 흔적이 있어 천판 쪽으로 쇠물을 삼입하여 주조한 것으로 보인다. 용鈕(龍鈕)는 단룡(單龍)으로, 몸을 심하게 구부러 한 발은 쳐들어 여의주를 들고 있고 또 한 발은 뒤로 하여 천판 위에 굳게 짚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입을 벌려 여의주를 입에 물고 턱을 천판 위에 댄 채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크게 뜬 눈과 날카롭게 솟은 지느러미, 발톱을 움켜쥐고 여의주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역동적이면서도 기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용의 몸 뒤쪽에는 아무 음통이 붙어있는데, 대나무처럼 3마디로 되어있고 윗부분에 화문대(花紋帶)가 높게 둘러져 있다. 천판의 가장자리에 죽 돌아가며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둘러져 있다. 입상화문대는 11세기 이후의 고려 범종에서 나타나는 천판 위의

장식으로, 보통 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장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연꽃 잎모양으로 하여 내부에 다시 꽃모양을 표현하고 꽃잎 사이에 間葉을 배치하였다. 천판에 이어져 있는 상대(上帶)에는 아래 위로 연주문(連珠文)을 배치하고 사이에 연당초문(蓮唐草文)이 성글게 표현되었으며, 상대 아래에는 상대(上帶)에 붙여 4개의 유곽(乳廓)을 표현하였다. 유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조금 넓은 사다리꼴 모양인데, 가장자리는 상대와 동일한 연주문(連珠文)을 두른 연당초문(蓮唐草文)으로 장식하고 안에는 9개의 유두(乳頭)를 배치하였다. 유곽 아래에는 천인상(天人像)과 당좌(撞座)를 교대로 배치하였는데, 천의를 휘날리며 연꽃 위에 앉아있는 천인은 형상이 분명치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양물을 바치는 모습인 듯하다. 그렇지만 천의의 움직임이 둔탁하고 신체에 비하여 얼굴이 큰 점 등 다소 형식화된 면을 볼 수 있다. 당좌는 자방(子房)이 큼직하고 6엽 사이에 간엽(間葉)이 표현된 전형적인 고려의 연화문당좌(蓮花文撞座)이다. 하대(下帶)에도 아래 위로 연주문(連珠文)을 두르고 화문(花紋)을 표현하였는데, 형태가 분명치 않지만 보상당초문(寶相唐草文)을 표현한 듯하다.

이 범종은 고려시대 후기의 범종으로, 단룡(單龍)에 음통(音筒), 화문(花文)이 표현된 상대(上帶)와 하대(下帶), 연화문 당좌, 유곽(乳廓) 등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조성기가 남아있지 않아 조성연대와 주조장(鑄造匠) 등을 알 수 없고, 당시의 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각양식이 소략하고 거칠어 처음에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됐으나 2006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2006.12.11)에서 고려 후기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큰 종이므로 문화재자료보다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

다고 의결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함.

3. 지정일자 : 서울시보 게재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과(02-2171-259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
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승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다음과 같

3.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승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승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승인동 200-16 일대	218,280	-	218,280	서고시 제2004-444호 (2004.12.30)	구역명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승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승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승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명 변경	구역명 조정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18,280	-	218,280	100.0	
일반상업지역	218,280	-	218,280	100.0	

이 결정(변경)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서울시고시 2004-444(2004.12.30)로 구
역결정된 승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여 도
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시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승인동 200-16일대

○ 면 적 : 218,280m²

나. 용도지구

1) 미관지구(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결정일	비 고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동대문~청량리	88,800 (3,600)	3,700 (650)	양측 12	건고350 (72.8.14)	왕산로지구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신설동9호광장 ~조암동	62,400 (4,080)	2,600 (340)	양측 12	건고519 (73.12.31)	청계고가로지구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동아일보사앞 ~청계천6가	67,200 (8,400)	2,800 (700)	양측 12	건고290 (73.7.4)	청계천지구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다산로변	27,000 (4,500)	900 (300)	양측 15	서고93 (95.3.30)	다산로

2) 방화지구(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결 정 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	동대문~청량리간	(3,600)	(650)	(12)	건고727호(63.12.31)	왕산로변(노선)
기정	방화지구	-	청계천변	(8,400)	(700)	(12)		청계천변(노선)

다. 도시기반시설

1) 교통시설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9	10,132 (4,865)	148,594 (76,138)	1	(700)	(24,500)	6	2,084 (1,494)	38,834 (29,639)	12	7,348 (2,662)	85,260 (21,999)
대로	3	(1,374)	(44,720)	1	(700)	(24,500)	2	(674)	(20,220)	-	-	-
중로	3	6,490 (1,214)	88,975 (16,519)	-	-	-	1	860 (270)	13,330 (4,135)	2	5,630 (944)	75,645 (12,384)
소로	13	2,268	14,899	-	-	-	3	550	5,284	10	1,718	9,615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 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	35	주간선도로	(700)	(송동263-21)	(송동1474)	일부도로		왕산(사도)
기정	대로	2	17	30	주간선도로	(312)	(송동263-21)	(창동436-86)	일부도로		대천(사도)
변경	대로	2	17	30-32	주간선도로	(312)	(송동263-21)	(창동436-86)	"		일부구간 확폭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5	28	주간선도로	(362)	송인동 (송인동 1474)	신당동 (송인동 1436)	일반도로	총고722 ('36.12.26)	난계로 일부구간 확폭
변경	대로	2	5	28~30	주간선도로	(362)	송인동 (송인동 1474)	신당동 (송인동 1436)	"		
기정	중로	2	18	15	보조 간선도로	860 (270)	송인동 (송인동 102-8)	신당동 (송인동 234-7)	일반도로	총고722 ('36.3.26)	청계로 교차부 일부구간 확폭
변경	중로	2	18	15~18	보조 간선도로	860 (270)	송인동 (송인동 102-8)	신당동 (송인동 234-7)	"		
기정	중로	3	1	13.5~18.5 (13.5)	집산도로	5,390 (704)	세종로광장 (창신동 436-86)	고산자로 (송인동 1436)	일반도로	서고130 ('03.5.26)	대상지내 청계로북단 2m확폭
변경	중로	3	1	13.5~18.5 (15.5)	집산도로	5,390 (704)	세종로광장 (창신동 436-86)	고산자로 (송인동 1436)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0	송인동 318-16	송인동 240-1	일반도로		도로확폭
변경	중로	3	2	10~15	국지도로	240	송인동 318-16	송인동 240-1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8	송인동 1499	송인동 206-13	일반도로		도로확폭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28	송인동 1499	송인동 206-13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40	송인2동 226-3	송인2동 211-9	일반도로		도로확폭, 구간연장 및 기종점변경
변경	소로	2	3	10	국지도로	442	송인동 1396	송인동 239-2	"		
기정	소로	3	5	5	국지도로	46	송인동 232-24	송인동 206-7	일반도로		도로확폭, 선형 정비, 구간연장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송인동 233-6	송인동 232-24	"		
기정	소로	3	6	3	국지도로	30	송인2동 233-8	송인2동 234-2	일반도로		소로2-4에 편입
폐지	소로	3	6	3	국지도로	30	송인2동 233-8	송인2동 234-2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20	송인동 288-1	송인동 3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270	창신동 401-7	창신동 398-3	일반도로		보행자전용 도로로 사용형태 변경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270	창신동 401-7	창신동 398-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30	송인2동 221	송인2동 234-88	일반도로		구간축소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144	송인2동 221	송인2동 23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4	국지도로	441	송인2동 234-32	송인2동 1433	일반도로		기종점 변경, 사용형태 변경
변경	소로	3	7	4	국지도로	205	송인2동 1433	송인2동 206-20	보행자전 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8	창신동 401-17	창신동 400-4	일반도로		공원조성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18	창신동 401-17	창신동 40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102	창신동 400-1	창신동 398-2	일반도로		공원조성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102	창신동 400-1	창신동 398-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1	6~8	국지도로	257	송인동 1383-2	송인동 206-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3	6	국지도로	73	송인동 297	송인동 24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112	송인동 248	송인동 296-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5	6	국지도로	250	송인동 200-10	송인동 228-5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88	송인동 217-10	송인동 21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7	6	국지도로	99	송인동 211-9	송인동 211-3	일반도로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7 (다산로)	대로2-17 (다산로)	• 교통환경개선 - 다산로일부구간(중3-2~청계로) 2m확폭	• 다산로와 청계로의 교차부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된 부지의 접합부에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확폭
대로2-5 (난계로)	대로2-5 (난계로)	• 교통환경개선 - 난계로일부구간(소로3-7~청계로) 2m확폭	• 난계로와 청계로의 교차부 및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의 접합부에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확폭
중로2-18	중로2-18	• 교통환경개선 - 청계로 교차부구간 3m 확폭	• 이면도로와의 진출입 및 간선가로와의 교차부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확폭
중로3-1 (청계로북단)	중로3-1 (청계로북단)	• 교통환경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간 2m확폭	• 청계로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간 2m확폭
소로2-1	중로3-2	• 보행 및 교통환경개선 - 다산로교차부~창신동396-3구간 확폭 (폭원 8m→10~15m)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및 구거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 및 보도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폭
소로3-8	소로2-2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기정폭원6m→변경폭원8m	• 청계천로에서 이면부로의 진출입의 교통환경의 개선
소로3-4	소로2-3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기정폭원6m→변경폭원10m - 기정연장140m→변경연장442m	• 대상지 중심의 이면부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차로확폭 및 구간 연장
소로3-2	소로3-2	• 일반도로→보행자전용도로	• 청계천과의 보행자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3	소로3-3	• 일부구간 폐지 - 기정연장 : 230m→변경연장144m	• 동묘남측낙후지역정비 및 동묘활성화, 청계천연계성을 위한 청계천특별계획구역II 계획에 따른 도로일부구간 폐지
소로3-5	소로2-4	• 이면부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계개선 - 폭원(5m→8m)	• 이면부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도로를 확폭하고 소로3-6과 통합하여 관리
소로3-6	-	• 폐지	• 소로2-4에 편입하여 관리
소로3-7	소로3-7	• 기종점변경, 보행자전용도로 - 연장(411m→205m)	• 동묘남측낙후지역정비 및 동묘활성화, 청계천연계성을 위한 청계천특별계획구역II 계획에 따른 도로일부구간 폐지 • 도로존치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
소로3-9	-	• 청계천변 가로공원계획 - 폐지	• 청계천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공원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
소로3-10	-	• 청계천변 가로공원계획 - 폐지	• 청계천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공원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
-	소로3-11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폭6~8m, 연장257m의 도로신설	• 이면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조성된 6~8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3-13	• 낙후지역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 - 폭6m, 연장73m의 도로신설	• 동묘서측 낙후지역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	소로3-14	• 낙후지역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 - 폭6m, 연장112m의 도로신설	• 동묘서측 낙후지역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	소로3-15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폭6m, 연장250m의 도로신설	• 이면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조성된 6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3-16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폭6m, 연장88m의 도로신설	• 이면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조성된 6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3-17	• 이면부 접근성 향상 - 폭6m, 연장99m의 도로신설	• 이면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조성된 6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	종로구 송인동 227-8.10	528.3	-	528.3	서종고 제2002-57호 (2002.7.26)	

2) 공간시설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①	근린공원	종로구 송인동 238-1 일대	9,316	감)866	8,450	건고 제123호 (1973.4.4)	동묘 근린공원
신설	공원②	근린공원	종로구 창신동 400-4 일대	-	증)3,515	3,515		
신설	공원③	근린공원	종로구 송인동 1435 일대	-	증)4,485	4,485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근린공원	동묘근린공원 면적보정 및 추가지정 (면적: 9,316→8,450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동묘근린공원 구적오차 보정(감 921m²) •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도로가각부 등) 55m² 포함
신설	근린공원	구역내 공원시설 신설 (면적: 3,515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복원에 따른 구역내 근린공원 신설
신설	근린공원	구역내 공원시설 신설 (면적: 4,485m ²)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①	연결녹지	종로구 송인동 234-82 일대	-	증)1,128	1,128		
신설	녹지②	연결녹지	종로구 송인동 204-11 일대	-	증)662	662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녹지	연결녹지 신설(면적: 1,128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청계천 및 주변공원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쾌적성, 안전성, 연계성을 확보하며 • 도심주변부 및 청계천 주변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녹지계획
신설	녹지	연결녹지 신설(면적: 662m ²)	

3) 교육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초등학교	송인동 242	13,360	증)157	13,517	서고 제5호(1987.2.17)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초등학교	구적오차조정 및 도로와 중복면적 조정(13,360㎡→13,517㎡)	1936년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중로2-18(총고722)와 중복된 면적 조정 및 기존학교면적의 구적오차 조정

② 획지에 관한 계획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간선 가로변	A1 A2 A3-(1,4,5,6,7,11,12,13) A4, A6, A9-(4,5)	2,000㎡이하	150㎡이상	• 간선가로변, 문화재양각적용지역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특별계획구역	-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름
	청계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II	-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름
	다산로	1,200㎡이하		• 획지선지정
이면부	A3-(2,3,8,9,10) A5, A7, A8 A9-(1,2,3,6,7,8) A10-(4,5) A11-(1,3,4,5) B	800㎡이하		• 이면부 공동개발지정·권장 적용 • 문화재양각적용지역 획지선 지정

※ 기존필지 및 획지계획·공동개발지정(권장)된 대지 규모가 상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획지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A1	1	송인동	1365대,1366대	1004.3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
	2	송인동	1367대,1367-1대	642.7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신축)
	3	송인동	1368대,1369대	644.0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동일소유자
	4	송인동	1370대	1305.8	획지선 지정		
	5	송인동	1371대	1175.9	획지선 지정		
	6	송인동	1372대,1375대	467.9	획지선 지정		맹지로인한 진입로 확보
	7	송인동	1376대,1377대,1378대,1379대, 1383대,1383-1대,1375-1도	2123.6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동일소유자
	8	송인동	1383-2대	1010.9	획지선 지정		
A2	1	송인동	1385대	1312.1	획지선 지정		
	2	송인동	1388대,1389대,1391대	1917.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신축)
	3	송인동	1390대	1428.8	획지선 지정		
	4	송인동	1392대	495.2	획지선 지정		
	5	송인동	1392-1대	331.5	획지선 지정		
	6	송인동	1396대	1976.5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7	송인동	1395대	230.7	획지선 지정	권장	
A3	1	송인동	200-6대,200-7대	968.0	획지선 지정		
	2	송인동	2008대,200-10대,200-11대	366.6	획지선 지정		맹지로인한 진입로 확보
	3	송인동	200-13대,200-14대,200-15대	242.9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동일소유자
	4	송인동	200-16대	3316.7	획지선 지정		
	5	송인동	200-26대	1587.1	획지선 지정		
	6	송인동	200-25대	503.2	획지선 지정		
	7	송인동	200-24대,200-32대,200-33대, 200-35대,200-36대,200-38대, 200-39대,207-39도	716.7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신축)
	8	송인동	200-32대,200-34대	249.9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9	송인동	200-36대,200-23대,2007-39도	477.7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A3	10	송인동	200-23대,207-7대,207-39도	170.2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11	송인동	207-4대,207-5대,207-6대, 207-24대,207-25대,207-26대, 207-27대,207-28대	896.7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12	송인동	207-78대,210-4대,211-1대, 212-1대,212-3대,212-4대, 212-5대,228-1대,228-2대	1022.5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13	송인동	228-4대,228-5대,228-6대	975.5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변(왕산로) 적정규모개발유도
A4	1	송인동	151-5도,151-7대,151-10도, 219대,220대,220-1대,220-2대, 221대,222대,223대,224대, 225-1대,225-2대	785.9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2	송인동	151-8대,218대,227-2대, 227-7대	918.8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3	송인동	227-4대,227-5대,227-9대	441.0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A5	1	송인동	239-9도,244-1도,245대, 246대,247대,248대,0-9가	645.7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2	송인동	244-1도,243대,244대	366.1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A6	1	송인동	102-6도,279대,280대,281대	597.1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2	송인동	102-6도,284대,286-3대, 287-1대,288-1대,290-1대, 290-1대,291대,292-1대,293대	482.1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
A7	-	송인동	294대,295-1대,295-2대,296-2대, 296-3대,296-4대,296-11대, 296-12대,296-13대,296-14대, 296-15도,296-16도,296-17도, 296-18대,296-19대,296-26대, 296-27대,296-48대,297도	790.7	획지선 지정	소규모 부정형필지 정비 및 진입 도로확보
A8	-	송인동	102-6도,242-7대,242-8대, 242-9구,242-10대,242-11대, 242-12대,242-13대,242-14대, 242-15대,242-18대	451.1	획지선 지정	소규모 부정형필지 정비 진입 도로확보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A9	1	송인동	296-21대,296-46대	332.6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2	송인동	296-23대,296-24대	260.1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3	송인동	297도,296-15도,298-9대	590.0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4	송인동	298-1대,298-2대,298-3대, 298-7대,299-2대,299-3대, 299-4대,303대,303-3대, 304대,297도	595.0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
	5	송인동	310대,312-2대,313-1대	1824.5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신축)
	6	송인동	313-2대	238.0	획지선 지정	
	7	송인동	313-11대	178.5	획지선 지정	
	8	송인동	313-12대	267.8	획지선 지정	
	9	송인동	313-6대,313-7대,313-8대, 313-13대,313-15대,313-23대, 313-24대,313-25대	514.5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10	송인동	313-9대,313-14대	231.4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A10	1	송인동	313-5대,313-16대,313-17대, 313-19대,318-21대,318-22대	594.2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2	송인동	316-1대	176.6	획지선 지정	
	3	송인동	316-2대	392.1	획지선 지정	
	4	송인동	317-19대	217.2	획지선 지정	
	5	송인동	317-26대,317-43대,317-44대	341.4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
A11	1	송인동	317-8대,317-47대,317-48대, 318-8대	353.9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2	송인동	317-20대	567.9	획지선 지정	
	3	송인동	318-8대,318-9대	194.3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4	송인동	318-11대,318-12대	293.9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5	송인동	318-13대,318-14대	204.0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6	송인동	318-15대,318-16대	273.7	획지선 지정	간선가로(다산로)변 적정규모 개발유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B1	1	송인동	1399대	183.8	필지단위			
	2	송인동	1400대	172.6	필지단위			
	3	송인동	1401대	345.2	필지단위			
	4	송인동	1403대	172.6	필지단위			
	5	송인동	1404대	172.6	필지단위			
	6	송인동	1405대	159.3	필지단위			
	7	송인동	1406대	159.3	필지단위			
	8	송인동	1407대	159.3	필지단위			
	9	송인동	1408대	159.3	필지단위			
	10	송인동	1409대	159.3	필지단위			
	11	송인동	1410대	170.2	필지단위			
	12	가	송인동	1417대	161.0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1418대	158.7	필지단위		
	13	송인동	1419대	446.4	필지단위			
	14	송인동	1419-1대	446.4	필지단위			
	15	송인동	1419-2대	754.5	필지단위			
	16	송인동	1420대	697.5	필지단위			
	17	송인동	1421대	337.9	필지단위			
	18	송인동	1421-1대	578.5	필지단위			
19	송인동	1421-2대	396.7	필지단위				
B2	1	송인동	1412대	165.3	필지단위			
	2	송인동	1413대	160.7	필지단위			
	3	송인동	1414대	321.4	필지단위			
	4	송인동	1416대	160.7	필지단위			
B3	1	가	송인동	201-4대	225.1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01-26대	268.1	필지단위		
	2	송인동	201-8대,201-7대	369.3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3	가	송인동	201-5대	191.1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01-6대	183.1	필지단위		
4	송인동	201-20대	210.2	필지단위				
5	송인동	201-28대	415.5	필지단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B4	1	송인동	201-10대	190.7	필지단위			
	2	가	송인동	201-11대	191.7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나	송인동	201-12대	189.8	필지단위		
	3	송인동	201-13대	205.3	필지단위			
	4	송인동	201-14대	273.4	필지단위			
	5	송인동	201-15대	206.9	필지단위			
	6	송인동	201-16대	286.3	필지단위			
	7	송인동	201-17대	234.7	필지단위			
	8	송인동	201-18대	1675.5	필지단위			
9	송인동	201-25대	384.0	필지단위				
B5	1	송인동	202-3대	937.9	필지단위			
	2	송인동	202-31대,202-32대	323.6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3	송인동	202-33대,202-34대	304.2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4	송인동	202-35대,202-36대	338.5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5	송인동	202-37대	721.7	필지단위			
B6	1	송인동	202-18대,202-19대,202-20대	411.6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2	송인동	202-21대,202-22대	274.4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3	송인동	202-23대,202-24대,202-25대	447.6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4	송인동	202-26대,202-27대	285.0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5	송인동	202-28대,202-29대	285.0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B7	1	송인동	202-4대,202-5대	332.2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2	송인동	202-10대	336.7	필지단위			
	3	가	송인동	202-12대	105.0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02-13대	306.8	필지단위		
	4	가	송인동	202-14대	109.1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02-16대	218.2	필지단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B8	1	송인동	211-3대,207-20대	195.9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2	송인동	207-31대	156.6	필지단위			
	3	송인동	207-32대	204.4	필지단위			
	4	송인동	207-33대,207-34대	198.7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5	송인동	207-36대,209-2대	122.0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6	송인동	207-30대,207-37대,207-38대	345.8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B9	1	송인동	207-19대,211-19대	222.4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2	송인동	207-40대,207-52대	331.9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3	송인동	207-47대,207-48대,207-49대, 207-79대,209-5대,209-6대	348.9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4	송인동	207-50대,207-51대	230.1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B10	1	송인동	211-7대	188.2	필지단위			
	2	송인동	211-8대	301.1	필지단위			
	3	송인동	211-9대,211-10대	260.5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4	가	송인동	211-11대	169.6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11-12대	422.8	필지단위		
	5	송인동	211-13대,211-14대,211-15대	266.4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6	송인동	211-16대	113.7	필지단위			
	7	가	송인동	211-17대,211-18대,	331.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11-21대	100.5	필지단위			
8	송인동	211-20대	273.4	필지단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B11	1	가	송인동	217-1대,217-20대		193.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5도		48.7	-		
	2	가	송인동	217-2대		199.6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5도		45.9	-		
	3	가	송인동	217-3대,217-14대		140.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5도		30.7	-		
	4	가	송인동	217-5대		161.8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5도		28.8	-		
	5	가	송인동	217-6대,217-8대,217-11대,		317.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5도		60.5	-		
	6	가	송인동	217-9대,217-21대,		221.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접근도로확보, 필지분할가능선
		나	송인동	217-10대		167.1	필지단위		
		다	송인동	217-15도		69.8	-		
	7		송인동	217-16대		979.5	필지단위		
8		송인동	217-25대		430.9	필지단위			
9		송인동	217-19대		990.9	필지단위			
B12	1		송인동	226-1대		544.8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2		송인동	226-7대,226-9대		661.1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3		송인동	226-6대,226-8대,226-12대, 226-17대		591.2	획지선 지정		기 공동개발
	4		송인동	151-5도,201-19도,226-2대, 226-3도,226-10대,226-11대, 235-1대,236-1대		917.3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5		송인동	201-19도,226-13대		412.5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B13	-		송인동	151-5도,236-2대,236-5도, 237-1대,237-3대,237-22대, 238-2사,239-9도		1093.8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B14	-	송인동	239-1대,239-2대,239-3대, 239-5대,239-6대	291.6	획지선 지정		동묘주변 소규모필지 적정규모 정비유도	
B15	1	송인동	241-1대,241-3대,242-31대	710.0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2	송인동	240-1대,240-15대,241-17대	461.1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3	송인동	241-4대,241-14도,241-15대, 241-16대,242-30대	692.0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4	가	송인동	241-9대,241-10대,318-18도	212.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241-5대,241-12대,240-19도, 242-28대	208.6	공동개발 지정		
	5	송인동	241-8대,318-18도	203.2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6	송인동	241-6대,318-18도	249.3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7	송인동	241-19대	311.7	필지단위			
	8	송인동	296-19대,296-48대,102-10대, 242-20대	677.3	공동개발 지정		이면부 접근로 확보	
	9	송인동	102-11대,242-21대,296-20대, 317-28대,0-11가	460.3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10	송인동	317-2대,317-64대,317-67대	188.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1	송인동	317-29대	159.0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12	송인동	317-30대,317-31대	324.6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13	송인동	317-32대,317-33대	337.8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14	송인동	317-58대	173.9	필지단위			
	15	송인동	317-21대,317-46대	478.7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16	송인동	317-5대,318-1대	657.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	가	송인동	318-2대,318-3대,318-4대	335.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 유도	
	나	송인동	318-5대,318-6대,318-7대	331.9	공동개발 지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C1	1	송인동	102-6도, 102-8도, 263대, 264대, 265대, 266대, 267대, 268대, 269대, 270-1대, 270-2대, 273대, 274대, 275대, 276대, 277대, 278대,	1659.2	획지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묘주변 특별계획구역 • 단위획지별, 또는 획지간 공동개발 가능 • 면적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획지면적 기준
	2	송인동	102-8도, 244-1도, 249대, 250대, 251대, 252대, 254대, 255대, 256-1대, 257대, 258-1대, 258-3대, 259대, 260-1대, 260-2대, 260-3대, 260-4대, 260-5대, 260-6대, 261대, 262대,	1591.5	획지선 지정	
C2	1	창신동	395-46구, 397대, 397-1대, 398-3대, 399-2대, 399-3대, 399-6구, 400-1대, 400-3도	1000	공공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세부 용도결정
	-	창신동	394-1대, 394-3대, 395-1대, 395-2대, 395-3대, 395-4대, 395-5대, 395-6대, 395-7대, 395-8대, 395-9대, 395-10도, 395-11대, 395-12대, 395-13대, 395-14대, 395-15대, 395-17도, 395-19대, 395-20대, 395-21대, 395-23대, 395-24대, 395-25대, 395-28대, 395-29대, 395-30도, 395-31대, 395-32대, 395-33대, 395-34대, 395-35대, 395-36대, 395-37대, 395-40대, 395-41대, 395-42대, 395-45대, 395-46구, 395-47도, 396-1대, 396-2대, 396-3대, 396-4대, 397대, 397-1대, 397-2도, 397-3구, 397-4도, 397-6구, 399-1대, 399-2대, 400-1대, 400-3도, 400-4대, 401-1대, 401-3대, 401-6대, 401-7대, 401-11대, 401-12대, 401-13대, 401-14대, 401-15대, 401-16대, 401-17대, 401-18대, 401-19대, 401-20대, 401-21대, 401-22대, 401-23대, 401-24대, 401-25대, 401-26대, 401-27대, 401-28대, 401-29대, 401-30대, 401-31대, 401-32대, 401-33대, 401-34대, 401-35대, 401-36대, 401-37대, 401-38대, 401-43대, 401-46대, 401-47대, 401-48대, 401-49대	9314	획지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 • 면적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획지면적 기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C3	1	송인동	232-2대,232-3대,232-19도, 232-22대,234-3도,234-10대, 234-11대,234-15대,234-17대, 234-18대,234-20대,234-22대, 234-23대,234-24대,234-32대, 234-35대,234-36도,234-38대, 234-39대,234-40대,234-41대, 234-43대,234-44대,234-45대, 234-47대,234-49대,234-54대, 234-55대,234-56도,234-60도, 234-61대,234-70대,234-76대, 234-77도,234-78대,234-79도, 234-80대,234-81대,234-82대, 234-83대,234-84대,234-90도, 236-5도,237-1대,237-2대, 237-4대,237-5대,237-6대, 237-7대,237-8대,237-9대, 237-10대,237-11대,237-12대, 237-15대,237-16대,237-17대, 237-18대,237-19대,237-20대, 237-23대,237-24대,237-25대, 239-9도,240-18도,0-10가, 234-42대,234-58도	5648.6	획지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I • 단위획지별, 또는 획지간 공동개발 가능 • 면적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획지면적 기준
	2	송인동	232-4대,232-5대,232-7대, 232-8대,232-9대,232-11대, 232-12대,232-13대,232-14대, 232-15대,232-17도,232-19도, 232-20대,232-23대,232-24대, 232-29도,232-31도,233-4중, 233-6도,233-8대,233-9대, 233-12도,233-13도,233-14대, 234-2대,234-4대,234-7대, 234-8대,234-9대,234-12대, 234-13도,234-28대,234-29대, 234-33도,234-51대,234-56도, 234-65대,234-69대,234-85대, 234-86대,234-95도,235-2대, 235-3대,235-4대,235-5대, 235-6대	5594.8	획지선 지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재지		면적 (㎡)	계획내용	비고
		법정동	지번			
C4	1	송인동	204-11대,204-14대,204-16대, 204-18대,206-5대,206-6대, 206-7대,206-8도,206-9대, 206-10대,206-13도,206-18대, 206-19대	6625.3	획지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II • 단위획지별, 또는 획지간 공동개발 가능 • 면적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획지면적 기준
	2	송인동	206-1대,206-2대,206-3대, 206-4대,206-11대,206-12대, 206-14대,206-17대	3333.2	획지선 지정	
	3	송인동	1424대,1425대,1426대, 1427대,1428대,1429대	2971.9	획지선 지정	
	4	송인동	1422대,1423대,1430대, 1431대,1433대,1434대	3040.1	획지선 지정	

③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권장·지정용도		전층 불허용도	비고	
	전층 권장용도	1층 지정용도			
간선 가로변	A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왕산로~ 다산로변
	B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학원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왕산로~ 난계로변 (신설동역주변)
이면부	C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 전층권장용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이면부
동묘주변 특별계획 구역	D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동묘~ 왕산로변
청계천변 특별계획 구역 I·II·III	E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청계천변 주변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가) 건폐율 기준

용도지역	건 폐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 문화재 양각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대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건폐율 완화가능

(나) 건폐율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적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문화재양각 적용필지	건축물 높이 및 용도	• 20m(5층)이하 건축물 건폐율 70%이하	
		• 20m(5층)이하 건축물로서 권장(지정)용도 수용시 건폐율 80%이하	

2) 용적률

(가)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연 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 된다. 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회 지 계 획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준수		기준용적률× 0.1	• 공동개발(지정,권장)및 획지로 계 획된 필지가 3개 이상일 경우 0.12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획지별 또는 특별 계획구역별 통합개발시 기준용적 률× 0.05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기준용적률× 0.1	
	필지 분할	필지분할가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건축물 용 도	권장/지정용도	지침준수시		기준용적률× (지정/권장용도면적÷ 주차장등 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 지정용도 100% 수용시 • 권장용도 70% 이상 수용시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 피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 피로티 구조 a=0.5 • 침상형 구조 a=1.0 •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a	• 벽면한계선 a=0.7 • 건축한계선 a=1.0 • (지하적용)건축한계선 a=1.5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0
			입체형 (지하)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a	
광고물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중로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및 기준 적용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상 대지 : 대지내조경의 무면적을 제외한 지층부 비건폐면 적의 30% 이상 자연지반보존시 • 200㎡ 이하 대지 : 전체 비건폐면 적의 30% 이상 보존시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50% 이상 조성시) 계단탐/설비면적/ 대지내 조경 완화면적에 계상된 면적은 제외 	
	생태면적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시 • 대지면적의 20%초과시 적용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 제외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2004.12.)에 적합할 경우 적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기준(녹색주차장 활성화계 획) 준수시 	
청계천 및 공원변 건축물	고층부 후퇴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내지 6층에서 5m이상 후퇴하 여 저층부 옥상면적의 50%이상을 옥외테라스로 설치한 경우 	
상가 주민 대책	삼일아파트 상가점포	동의시	기준용적률+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점포 30%이상 동의시 a=30% • 상가점포 50%이상 동의시 a=50% • 상가점포 65%이상 동의시 a=65% • 상가점포 80%이상 동의시 a=80% • 상가점포 100% 동의시 a=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에 한 하여 적용함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1+1.3a)이내	※ a= 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 :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선을 준수하여 획지(공동개발)단위로 개발하거나,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획지(공동개발 지정/권장)간 통합개발 등을 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3. 권장·지정용도의 인센티브 가능면적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적용함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6. (지하적용)건축한계선에 관한 인센티브는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용한다.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8. 삼일아파트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 상가수 산정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 전면 상가수와 특별계획구역 III 전면 상가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높이완화 인센티브 적용시도 같다. 동의율의 산정 및 완화된 높이 및 용적률의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0조(삼일아파트 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에 따름.
9.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은 관련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다.
10. 녹색주차장 인센티브는 옥외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부여

다. 건축물의 높이

1) 높이기준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간선가로변	청계천변	최고높이 80 m 이하	
	왕산로, 난계로변	최고높이 70 m 이하	
	다산로변	최고높이 60 m 이하	
이면부		최고높이 50 m 이하	
동묘주변 및 학교주변부		최고높이 30 m 이하	

※ 90m이하의 범위내에서 최고높이의 10%이내는 구도시계획위원회, 20%이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 단,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90m를 초과하여 높이 완화도 가능

※ 동묘에 의하여 문화재양각규제(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등) 적용지역은 문화재양각을 우선 적용하되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된 높이(30m, 50m, 70m 또는 80m)이하의 범위내에서 승인받은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서로다른 최고높이에 속하는 대지(획지)간 공동개발의 경우 면적이 가장 큰 대지(획지)의 최고높이제한을 적용함

2) 높이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항목	완화기준	비고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	삼일아파트 상가부지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점포 50%이상 동의시 높이인센티브: 4m+(80m×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0.5÷ 당초의 대지면적) • 상가점포 65%이상 동의시 높이인센티브: 5.5m+(80m×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0.65÷ 당초의 대지면적) • 상가점포 80%이상 동의시 높이인센티브: 7m+(80m×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0.8÷ 당초의 대지면적) • 상가점포 100% 동의시 높이인센티브: 10m+(80m×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1÷ 당초의 대지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높이완화를 받을 수 있는 제공부지가 변경되거나 '당초의 대지면적'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의 범위내에서 위 산식을 적용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

구분	가 구 번 호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 가로변	A	1m	블록 이면부
			3m	간선가로변
			5m	난계로변 (장래교통수요대처)
	특별계획 구 역	동묘주변 특별계획구역	1m	이면도로변
			3m	간선가로변 (왕산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	2m	이면도로변
			3m	간선가로변 (다산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	1~2m, 5m(공개공지)	이면도로변
			3m	녹지변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	1~2m	이면도로변
			3m	녹지변
			5m	난계로변
이면부	B	1m~2m	이면도로변	
벽면 한계선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II	고층부벽면한계선 5m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저층부)에서 5m	청계천 및 청계천에 면한 공원·녹지변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	벽면한계선(1층부) 2m • 건축한계선에서 2m	보행자전용도로변
	특별계획 구 역	동묘주변특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획지) 경계선에서 2m	동측도로변

※ 건축한계선은 간선가로변 3~5m, 이면부 1~2m를 원칙으로 하나 보행환경의 개선, 도로의 접근성 향상, 가각정비 등을 위해 지정하는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에 관한 조성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하며, 지침준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④ 기타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적 용 구 역
대지내 공 지	공공보행 통로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II·III) 청계천과 이면부 연계 • 외부의 보행동선을 내부와 연결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III • 왕산로변 (A3-5, A3-6 획지사이)
	공개공지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I 서측도로(중로2-18)변을 따라 동 묘와 청계천을 연계하는 선형의 공개공지(최소폭원 5m) 조성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형태로 조성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II

구 분		계 획 내 용	적 용 구 역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 지장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접하는 대지 : 인도부속형 •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대지 : 차도부속형
	쌈지형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 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5m 이상, 최소면적 25㎡ 이상 • 피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 2개소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 (C4-1,2,3,4 각 1개소)

나. 교통처리계획

1) 차량출입금지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 간선가로변(청계천로, 왕산로, 다산로, 난계로)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차량출입불허

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설	동묘주변 특별계획구역	종로구 송인동 260-1번지 일대	3,537㎡	• 문화제양각규제에 의해 침체된 대상지의 정비율 유도, 주변 도시환경 개선
신설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	종로구 창신동 401-1번지 일대	10,983㎡	• 청계천변 및 천변가로공원과 연계된 주거 및 상업기능 활성화
신설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	종로구 송인동 234-2번지 일대	14,233㎡	• 청계천 및 동묘공원과 연계된 주거 및 상업기능 활성화 • 동묘남측 낙후지역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원·녹지 연계
신설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 (송인3주택재개발구역포함)	종로구 송인동 206-2번지 일대	17,711㎡	• 청계천변 및 천변가로공원과 연계된 주거 및 상업기능 활성화

나. 특별계획구역지침

1) 동묘주변 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면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 획	기준/허용 용적률	500%이하 / 800%이하
	상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이하 •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6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50m이하 • 문화재양각(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등) 우선적용 • 단,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50m이하의 범위내에서 승인받은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음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지정용도(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산로변 : 3m • 동측도로변 : 1m
	벽면한계선(1층부)	• 동측도로변 : 건축한계선에서 2m
	차량출입 금지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산로변 • 동측도로변 (왕산로와 동측도로 교차부에서 20m이내)
	구역내개발	• 특별계획구역 전체 통합개발 및 단위획지별 개별개발 가능

※ 권장·지정용도의 수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2)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획	기준/허용 용적률	500%이하 / 800%이하
	상 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이하 •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건폐율		6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80m 이하 •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90m 초과하여 높이완화 가능
용 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지정용도(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측 부지에 공공용지를 조성 (최소면적 1,000㎡) ※ 공공용지의 구체적 토지이용 및 시설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공공보행통로	대상지 중심부에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 (최소폭원 4m이상)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측도로 공원부지 이면부 공개공지 조성 (쌈지형) •대상지 동측 부정형 부지에 공개공지 조성 (쌈지형)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변 : 2m •간선가로변(다산로) : 3m
	벽면한계선(고층부)	남측도로변 건축한계선에서 5m (단, 10층이하 건축물로서 재료, 디자인, 색채로 3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를 구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계로변 공원 •다산로변 •북측도로변 (다산로와 북측도로 교차부에서 20m이내)

※ 권장·지정용도의 수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3)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 획	기준/허용 용적률	500%이하 / 800%이하
	상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 이하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건폐율		6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계천변 최고높이 80m 이하 •문화재양각(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등) 우선적용 •단,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80m이하의 범위내에서 승인받은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음
용 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권장용도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지정용도(1층)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녹지의 설치 및 조성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녹지는 기본적 위치 및 최소면적만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청계천로변으로 계획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녹지를 설치 및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대상지 서측(중로2-18)변으로 동묘와 청계천을 연계하는 선형의 공개공지 조성 (최소폭원 5m)
	건축한계선	• 청계천변 : 3m • 서측 도로변 : 5m • 북측 도로변 : 2m • 동측 도로변 : 1m
	벽면한계선(고층부)	• 청계천변 건축한계선에서 5m (단, 10층이하 건축물로서 재료, 디자인, 색채로 3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를 구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	청계천변
	구역내개발	특별계획구역 전체 통합개발 및 단위획지별 개별개발 가능

※ 권장·지정용도의 수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III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 획	기준/허용 용적률	500%이하 / 800%이하
	상한 용적률	• 1000% 이하 •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건폐율		6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90m 초과하여 높이완화 가능
용 도	불허용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지정용도(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녹지의 설치 및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녹지는 기본적 위치 및 최소면적만을 지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지는 청계천로변으로 계획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녹지를 설치 및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 (Ⅲ-1,2획지 경계부, Ⅲ-3,4획지 경계부)(최소폭원 4m이상)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도로변 짚지형 공지 조성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계로변 : 5m •청계천로변 : 3m •북측도로변 : 2m •서측도로변, 소로3-11(신설)도로변 : 1m
	벽면한계선(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측 보행자전용도로변 대지(획지)경계선에서 : 2m
	벽면한계선(고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계천변 건축(벽면)한계선에서 : 5m •단, 10층이하 건축물로서 재료, 디자인, 색채로 3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를 구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계천변 •난계로변 •난계로와 북측도로 교차부에서 20m 이내구간
구역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계획구역 전체통합개발 및 2~4개 획지별 통합개발 또는 단위획지별 개별개발 가능 •Ⅲ-2,Ⅲ-3 통합개발시 소로3-11 중 구역내 포함되는 도로는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보차용용도로로 변경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가능 	

※ 권장·지정용도의 수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⑥ 관계결정도면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공공부문 시행지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전화 : 6361-3921) 및 종로구 도시계획과(전화 : 731-14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195호(1996. 7.5)로 구역 결정된 노원구 월계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결정취지

○ 종전 건축법에 의해 수립된 노원구 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계 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 도시설계)이 2000년 이후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제·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령 등에 적합하게 재정비(변경)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함.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월계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380-1일대	25,100	1,314	26,414	서고시 제195호 1996.7.5	

나.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 383-3일대	1,157	•지역내 여건과 유사한 인접지역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구역변경(도로포함)
변경	②	노원구 월계동 85, 85-1	177	•도시계획시설(도로)과 불부합되는 지역으로서 시설선과 일치
변경	③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 409-12일대	감20	•지번합병에 의한 결과 반영으로 제척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434	-	26,434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57	감) 1,157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	20	구역외
	준주거지역	25,277	1,137	26,414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노원구 월계동 383-3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1,157	400	•여건이 유사한 신규편입지역에 대하여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조정
②	노원구 월계동 409-12	준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	250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제척)으로 인접지역과 동일하게 조정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2,150 (692)	27,699 (8,305)	2	1,510 (340)	23,720 (5,920)	1	51	453	2	589 (301)	3,526 (1,932)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00 (230)	14,000 (4,600)	1	700 (230)	14,000 (4,600)	-	-	-	-	-	-
소로	4	1,450 (462)	13,799 (3,705)	1	810 (110)	9,720 (1,320)	1	51	453	2	589 (301)	3,526 (1,932)

주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가정	중로	1	182	20	집산 도로	700 (230)	성북역앞	장위동 (대로3-40)	일반도 로	광운대앞	서고84 (78.3.9)	광운길
가정	소로	1	14	10~8	국지 도로	810 (110)	월계동 379-46	대로3-39	일반도 로	-	서고60 (74.5.29)	자근내 1길
신설	소로	2	170	8	국지 도로	51	월계동 414-2	월계동 379-23	일반도 로	-		
가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484 (196)	월계동 399-1	월계동 379-7	일반도 로	-	서고60 (74.5.29)	
신설	소로	3	126	6	국지 도로	105	중로1-182	월계동 379-39	일반도 로	-		

주 : ()는 구역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170	•노선신설(B=8m, L=51m)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3-126	•노선신설(B=6m, L=105m)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가구 변경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 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A-1	A-1, A-2	
	A-2	A-2	
	B-1	A-3, A-4	
	B-2	A-5	
	B-3	A-6	
	C-4	B-1	
	B-4	B-2, B-3	
	C-1	C-1, C-2	구역계 편입부분 포함
	C-2	C-3	
	C-3	C-4	

나. 획지 변경 결정조서

■ 단위획지의 개발규모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A-3, A-4, A-5, A-6, B-3	-	2,500	성북역 전면 블록
그외블록	-	1,500	

주)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추가 공동개발은 이면부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구 및 획지 변경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A-1	1	380-4	469	380-5, 8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기건축(공동개발 해제)
	2	380-8, 380-5	251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A-2	1	379-39	181	379-28, 29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379-28, 379-29, 379-30, 379-31	288	379-28, 29와 공동개발 지정 379-30, 31과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동일소유 및 과소필지 해소 확지분할가능선 [(379-28, 29), (379-30,31)]
	3	379-40	198	379-30, 31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4	379-42, 379-32	175	공동개발 지정 379-43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5	379-33, 379-34, 379-35	248	379-33, 34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동일소유
	6	379-43, 379-45	294	379-45, 46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7	379-46, 379-36	171	공동개발지정 379-45, 35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A-3	1	380-1, 82-2, 382-3, 82-4, 382-5, 82-7, 382-8, 82-9, 382-10, 382-11, 382-13, 85-1	2,153	382-2, 5 공동개발 지정 382-3, 13 공동개발 지정 382-4, 27, 8, 9, 10, 11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기건축
A-4	1	379-19, 379-15, 379-20	319	379-19, 20 공동개발 지정 379-15, 16, 22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379-16, 379-22	189	공동개발 권장 379-15, 20, 19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기건축(공동개발 해제)
	3	379-11, 379-12, 379-2, 379-8, 379-9, 16-1, 416-2	382	379-11, 12 공동개발 지정 379-2, 8, 9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A-5	1	379-23, 379-24, 379-17, 379-18	291	379-23, 24 공동개발 지정 379-17, 18, 25, 49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379-25, 379-49	211	공동개발 지정 379-17, 18, 23, 24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3	379-13, 379-14, 379-10	174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A-6	1	410-1, 410-5	404	-	확지선 지정	기건축
	2	413-1	579	414-2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기건축(공동개발 해제)
	3	414-2, 85-3	557	-	확지선 지정	
B-1	1	409-12	236	383-30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383-30	362	409-12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3	383-28, 383-29	180	공동개발지정 383-27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B-1	4	383-26, 383-27	149	383-4, 26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과소필지 해소
	5	383-4	178	383-26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과소필지 해소
B-2	1	383-42	284	410-7, 8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410-7, 410-8	665	383-42와 공동개발권장	확지선 지정	
B-3	1	411-4, 411-53, 410-4	1,492	공동개발권장	확지선 지정	
C-1	1	379-50	112	-	-	신규편입
	2	383-3	393	-	-	신규편입
	3	383-6	156	383-5와 공동개발 권장	-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4	383-4	172	383-6과 공동개발 권장	-	
C-2	1	383-8	156	-	-	
	2	383-9, 383-33, 383-34	178	공동개발 지정 383-10, 45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3	383-25	179	383-21, 22, 24 공동개발	-	
	4	383-21, 383-22, 383-24, 383-36	917	공동개발권장 383-21, 22, 24 공동개발 지정	확지선 지정	확지분할가능선 [(383-24, 22 일부) (383-22일부, 383-21, 36)]
	5	383-11, 383-12	218	383-36과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지정	
	6	383-10, 383-45	195	공동개발지정 383-9, 33, 34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C-3	1	383-14	188	383-15와 공동개발	-	
	2	383-15	195	383-14와 공동개발	-	
	3	383-19, 383-20	330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4	383-16	337	383-17, 39와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5	383-17, 383-39	159	383-16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C-4	1	378-65, 378-66	264	공동개발지정	확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2	387, 387-2, 387-3, 387-4, 390	1,121	387-2, 3, 4 공동개발 권장 387, 390, 390-1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기건축
	3	391-1	481	387, 390과 공동개발 권장	확지선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 결정조서

■ 불허용도

구 분		가구번호	불 허 용 도	비 고
기정	E1	전층 A-1~A-2 B-1~B-4 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상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2	전층 C-1~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상 	
변경	N	전층 구역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 결정조서

■ 권장용도

구 분		가구번호	권 장 용 도	
			1 층	전 층
기정	E1	A-1~A-2, B-1~B-4, 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E2	C-1~C-3	•근린생활시설(접골원, 조산소 제외)	•근린생활시설
변경	U1	A-3~A-6, B-2, B-3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소매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U2	A-1, A-2, B-1, C-1~C-4	•제1종 근생시설 중 소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	전구역	60%이하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용적률 변경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지정용적률)	변경(기준/허용용적률)	
-	B-2, C-1, C-2, C-3 BL	C-1일부	400%이하	200%/330%이하	2중일단주거→준주거
	A-1, A-2, B-1, B-3, C-4 BL	C-1, C-2, C-3, C-4 BL 일부	450%이하	250%/360%이하	8m미만 도로변
	B-4 BL	그 외	500%이하	300%/360%이하	

3)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최저)	변경(최고)	
-	B-1, B-3, B-4, C-4	성북역 전면 20m도로변	3층	50m	
		광운길변		40m	
		그외		25m	

주 : A-4, A-5BL의 경우 블록단위 개발시 50m까지 완화 가능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건축선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축 지정선	광운길 양측변 (C-1, C-2, C-4블록)	-	2m	-	대지의 활용성 증진 및 가로변 전면공지 확보를 위해 변경
건축 한계선	-	광운길 서측 (C-2, C-3)	-	2m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자근내1길 양측	자근내1길 양측	2m	2m	
	성북역-광운길간 도로 양측 (B-3, B-4)	성북역-광운길간 도로 양측 (B-2, B-3, A-6블록)	2m	2m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축 한계선	성북역 전면도로변	성북역 전면도로변	3m	3m	
	C-1블록 서측	지구서측 도로변 (C-1, C-2, C-4블록)	중심선에서 4m	1m	도로노선을 따라 지정
	A, B블록 내부	A-2블록 내부	중심선에서 4m	중심선에서 2m	폭원 축소
		A-1블록과 A-3블록	중심선에서 3m	중심선에서 3m	
	C블록 내부	C블록 내부	중심선에서 3m	중심선에서 3m	
중심선에서 4m			중심선에서 4m		

■ 벽면선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층벽면 지정선	-	B-1 광운길변	-	2m	• 보도 확보 • 건축한계선을 벽면지정선으로 대체(대지의 폭원협소)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층부 바닥 높이	전구역	광운길, 성북역 전면 도로변	• 상업용도건물의 1층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레벨과 같게함. 경사 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 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10cm 이내로 함	
개구부	전구역	광운길, 성북역 전면 도로변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 건 물들과 동일(양쪽이 다를 경우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	•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의 2개소이 상 출입구를 설치할수 없음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건물들과 동일	
벽면 처리	폭20m이상 도로 및 폭 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광운길, 성북역 전면 도로변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금지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 금지	
투시벽	간선가로변	광운길, 성북역 전면 도로변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 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서터	12m이상 도로변	광운길, 성북역 전면 도로변	•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 사용	•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 사용	-

3)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적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은 가로 방향의 판류형 및 입체형을 원칙으로 함 • 설치하는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옥외광고물 형태로 옥상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을 금지

구분	색 채	형상·크기	위치·계수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며 특히 외벽과 보색관계나 색상대비가 큰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한 건물에 설치하는 여러 간판은 같은 계통의 바탕색을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간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세로의 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둘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돌출폭은 30cm이하로 하되, 층별 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설치 • 변형간판은 입체형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업소당 1개만 설치 • 건물의 3층이하는 판류, 입체형, 문자·도형부착 부착하며, 4층 이상은 입체형, 문자·도형으로 한다. 1층 부분은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
지주이용 간판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단까지의 높이 : 10m이내 • 1면의 면적(입체형일 경우 가장 넓은 편) 10㎡ 이내로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는 40㎡를 초과할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면에 2개 업소 이상 통합 연립형으로 1개를 설치 •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선 후퇴 부분의 전면공지 내에 설치금지 • 보도의 경계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로부터 100cm이상) 이격 • 네온, 전광, 점멸 금지
돌출형 간판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상단은 벽면높이 초과 금지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 금지 • 세로길이 20m 이내 • 간판두께는 50cm 이내 • 이,미용업소 두께 : 지름 30cm이내, 길이150cm이내 • 벽면과 간판간격 필요시 30c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 2개이상 업소가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에 위치 • 전면폭 10m이하인 건물은 한줄로, 10m초과할 경우 초과시 한줄로 표시 • 부조건물, 가설 건축물은 표시 금지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 개 공 지	-	A-4	-	위치지정	• 성북역광장과 연계한 휴식 공간 제공
	-	A-6	-	위치지정	

나. 대지내 통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보행 통로	B-1블록과 B-2블록 사이		A-3블록과 A-4블록 사이	폭 4m	폭 4m	
보행자 우선도로	A-1블록, A-2블록과 B-1블록, B-2블록 사이, B-2블록과 B-3블록 사이		-	폭 6m	-	• 보행자우선도로 폐지
보차혼용 통로	-		A-1블록과 A-3블록 사이		폭 6m	• 대지경계로부터 각 3m씩 보행자 우선도로 기능 수용

다. 차량동선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차량출입 금지구간	광운길 양측	광운길 양측	차량출입 금지구간	차량출입 금지구간	
	자근내길 서측	자근내길 양측	차량출입 금지구간	구역편입으로 추가된 구간 추가 지정	

라. 옥상녹화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적합하게 조성	

4.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항목		내용	완화조건	산정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이하 : a=0.1 • 3~4필지 : a=0.15 • 5필지 이상 : a=0.2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 최대개발규모 이내로 구역내 획지계획 미수립지 • 2필지이하 : a=0.1 • 3~4필지 : a=0.15 • 5필지이상 : 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특정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특정층연면적) × 0.1	특정층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40%이상시 인정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 및 특정층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전층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항 목		내 용		완화조건	산 정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 공	지상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 개방형구조 : a=1.0 ※ 지하 공공보행통로 지하 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 부여
		보행통로	입체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건축물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노원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적용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계획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용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서울시 기준 적용
	녹색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서울시 기준 적용
건물내 일정공간을 보육시설로 공공에 제공할 경우		무상귀속시			기준용적률 × 0.63	

- 주 :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은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 중복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추가 건축선후퇴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벽면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의 변경
 3.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5. 수중·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관련도면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전화 : 6361-3934)

및 노원구 도시정비과(전화 : 950-388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149호(1996.6.3)로 구역 결정된 노원구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 묵동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재정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결정취지

- 구역명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구역의 인식성 제고를 위한 구역명 변경
- 중전 건축법에 의해 수립된 노원구 묵동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 도시설계)이 2000년 이후 도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이 제·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령 등에 적합하게 재정비(변경) 하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함.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	묵동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릉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670 일대	35,733	-	35,733	서고시 제149호 1996.6.3	면적 변경 없이 구역 명칭만 변경

나.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 ²)	변경 사유
변경	노원구 공릉동 670 일대	35,733	•1996.6.3 결정고시된 묵동지구중심을 행정구역 공릉동)과 일치시켜 구역의 인식성 제고를 위해 구역명 변경

주 : 구역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가능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5,733	-	35,733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연장(m)	폭원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화랑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성북구계~화랑대역 (6호선)	37,920 (5,280)	1,580 (440)	12m	2002.1.18	
기정	-	동일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공릉동 323-1~ 중랑구계(화랑로변)	33,240 (1,128)	1,385 (94)	12m	2002.7.5	

주: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6	2,955 (702)	54,746 (9,686)	2	2,433 (180)	48,660 (3,600)	2	167	1,826	2	355	4,260
대로	-	-	-	-	-	-	-	-	-	-	-	-
중로	5	2,858 (605)	53,970 (8,910)	2	2,433 (180)	48,660 (3,600)	1	70	1,050	2	355	4,260
소로	1	97	776	-	-	-	1	97	776	-	-	-

주: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24	20	잠산도로	2,433 (60)	대로1-13	하계동 322-1	일반도로	-	서고164 (92.5.26)	
기정	중로	1	-	20	잠산도로	120	대로1-13	공릉동 687-2	일반도로	-	서고1979-326 (79.9.28)	
변경	중로	1	A	20	잠산도로	120	대로1-13	공릉동 687-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143	15	잠산도로	70	대로1-13	공릉동 661-1	일반도로	-	서고70 (77.3.14)	
기정	중로	3	-	12	잠산도로	244	대로1-18	중로 1-124	일반도로	-	서고1979-326 (79.9.28)	
변경	중로	3	A	12	잠산도로	244	대로1-18	중로 1-124	일반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2	집산도로	111	대로1-18	공릉동 683-1	일반도로	-	서고1979-326 (79.9.28)	
변경	중로	3	B	12	집산도로	111	대로1-18	공릉동 683-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97	대로1-13	공릉동 683-24	일반도로	-	서고1979-326 (79.9.28)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97	대로1-13	공릉동 683-24	일반도로	-	-	

주 : ()는 구역내 연장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1-A	○ 번호부여(B=20m, L=120)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기결정된 도로에 번호부여
-	중로3-A	○ 번호부여(B=12m, L=244)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기결정된 도로에 번호부여
-	중로3-B	○ 번호부여(B=12m, L=111)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기결정된 도로에 번호부여
-	소로2-A	○ 번호부여(B=8m, L=97)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기결정된 도로에 번호부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가구 변경 결정조서

구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B-1	A	
	A-1	B	
	A-2	C	
	A-3	D	

나. 획지 변경 결정조서

■ 단위 획지의 개발규모

도면 표시 번호	최대개발규모(m ²)		비 고
	기 정	변 경	
A, B, D 블록	-	6,000	
C 블록	-	10,000	

주)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추가 공동개발은 이면부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A	1	683-1, 683-2	432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초등학교앞 차량출입제한
	2	683-25, 683-24	370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초등학교앞 차량출입제한
	3	683-26, 683-27	264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4	683-28, 683-29	264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5	683-21	161	683-22와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해제	
	6	683-22	164	683-21과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해제	
	7	683-23	152	-	-	
	8	683-30, 683-31	247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9	683-20	345	683-18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10	683-18	393	683-20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1	683-16	432	683-17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2	683-14, 683-15, 683-17	383	공동개발지정	획지선 지정	
	13	683-34	220	683-12, 33과 공동개발 지정	683-12, 33과 공동개발 권장	
	14	683-33	205	683-12, 34와 공동개발 지정	683-12, 34와 공동개발 권장	
	15	683-12	302	683-33, 34와 공동개발 지정	683-33, 34와 공동개발 권장	
	16	683-9, 683-10, 683-11	303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17	683-3, 683-8	209	-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18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8	683-4, 683-5, 683-6	341	683-4, 683-5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17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B	1	680-1, 680-2, 680-8, 680-9, 680-11, 680-13, 680-14, 680-15, 680-16	2,382	680-1, 2, 9, 11, 13, 14 공동개발지정 680-15, 16 공동개발지정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B	2	680-10	613	-	-	
	3	680-17, 680-18	297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해소
	4	680-3, 680-4, 680-5, 680-6, 680-7	1,269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
C	1	670-1	379	-	획지선 지정	
	2	670-31	332	-	획지선 지정	우체국
	3	670-17, 670-18, 670-33	340	670-18, 33 공동개발지정 670-17, 19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과소필지 해소
	4	670-19	155	670-17과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5	670-20, 670-13, 670-32	2,795	공동개발지정	획지선 지정	
	6	670-12	261	670-11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7	670-11	615	670-12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8	670-9	706	670-8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9	670-8	513	670-9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10	670-7	643	672-6, 25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1	670-6, 670-25	643	공동개발 지정 670-7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2	670-2, 670-3, 670-4, 670-5	2,526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
D	1	661-1, 661-2	388	공동개발 지정 661-3, 21과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
	2	661-21	236	661-1, 2, 3과 공동개발 권장	-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3	661-19, 661-20	418	공동개발 지정 661-16, 17과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4	661-16, 661-17	372	공동개발 지정 661-19, 20과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5	661-8, 661-15	934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동일소유
	6	661-14	339	661-13과 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D	7	661-9, 661-11, 661-13	719	661-9, 11공동개발 지정	획지선 지정	
	8	661-7	332	661-6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동사무소
	9	661-6	343	661-7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0	661-5	581	661-4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11	661-4	429	661-5와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기건축 (공동개발 해제)
	12	661-3	432	661-1, 2, 21과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 결정조서

■ 불허용도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	전층 A-1, A-3 간선변 B-1 간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 미관지구 불허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숙박시설 	
	B1	전층 A-3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B2	전층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 미관지구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C	전층 A-1 이면부 B-1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정화구역내 절대금지용도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변경	N1	전층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미관지구 불허용도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병원과 같이 설치하는 장례식장 제외) •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심의통과시 가능)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변경	N2	전층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미관지구 불허용도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실외골프연습장 • 종교시설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병원과 같이 설치하는 장례식장 제외) • 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내 금지시설(심의통과시 가능)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 결정조서

■ 권장용도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1 층	전 층	
기정	A	A-1, A-3 간선변 B-1 간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B1	A-3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중 법원 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전시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전용건축물
	B2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전시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전용건축물
	C	A-1 이면부 B-1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 •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변경	U1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중 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U2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전구역	60%이하	60%이하	

2) 용적률 변경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지정용적률)	변경(기준/허용)	
-	B-1	A 블록 8m도로변	600%이하	250% / 550%이하	12m미만 도로변
	A-1, A-2, A-3	그외	700%이하	300% / 630%이하	

3)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조서

■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최저)	변경(최고)	
-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변	5층	72m	단 화랑로 및 동일로에 접하는 화지에 한함
	블록내부	A블록 20m도로변 C, D블록 내부	3층	50m	
		A블록 8m도로변		30m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건축선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 지정선	화랑로 및 동일로	화랑로 및 동일로	3m	3m	
건축 한계선	8m 도로변	8m 도로변	3m	2m	보행 및 차량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건축 한계선의 폭원 조정
	12m 도로변	A, B블록	3m	2m	
		C, D블록		3m	
	15m 도로변	15m 도로변	2m, 3m	2m, 3m	
	20m 도로변	20m 도로변	3m	2m	
	A-1 내부	A블록 내부	2m	-	공공보행통로의 변경에 따라 건축한계선 변경
B-1 내부	B블록 내부	2m	4m		

○ A BL의 경우 획지간 공동개발 획지(14번, 15번, 13번획지 및 17번, 18번획지, 683-7)의 경우 공동개발 불이행시 15번, 18번 획지에 대한 이면부 건축한계선 2m 적용.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벽면지정선	화랑로 및 동일로	2m	-	신축건축물의 적용사례 저조 및 효율성 미비에 따른 벽면선 폐지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층부 바닥높이	전구역	동일로 및 화랑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상업용도건물의 1층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레벨과 같게함.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10cm 이내로 함	
개구부	전구역	동일로 및 화랑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 건물들과 동일(양쪽이 다를 경우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	•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의 1개소의 출입구만 허용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건물들과 동일	
벽면처리	전구역	전구역	•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 유지	•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 유지	
	폭20m이상 도로 및 폭 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폭20m이상 도로 및 폭 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금지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 금지	
투시벽	간선가로변	동일로 및 화랑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서터	12m이상 도로변	12m이상 도로변	•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 사용	• 1층 서터는 투시형 서터사용	-
외관	전구역	동일로 및 화랑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건물의 옥상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하여 외관의 변화 구상	• 탑상형 권장 • 건축물의 장면과 단면의 비율이 1/2이상이고, 건폐율 40%이하인 건축물(단, 10층이상의 탑상형일 경우 5층이상의 부분에만 적용)	
1층 외부 형태 및 야간 조명	간선도로변에 면한 대지	동일로 및 화랑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쇼윈도의 설치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형태 및 조명시설권장	• 쇼윈도의 설치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형태 및 조명시설권장	
	폭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		• 10층이상 건물은 가로별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상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등에 의한 야간 조명등의 설치권장	• 10층이상 건물은 가로별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상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등에 의한 야간 조명등의 설치권장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축선 후퇴부분	-	미관지구내	-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설치 금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제1항의 예외조항은 제외)	
전면부	-	미관지구내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 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 조망·굴뚝·환기시설 건축물의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유사한 것 설치 금지	-

주) 탑상형 건축물이란 합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1/2이상이고, 건폐율을 40%이하로 제한시킨 건축형태를 말함. 단, 10층이상의 탑상형일 경우, 5층이상의 부분에만 적용.

3)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적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간판은 가로 방향의 판류형 및 입체형을 원칙으로 함 •설치하는 간판에 내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 또는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 (단, 각각부는 1개 추가설치 가능) •옥외광고물 형태로 옥상간판, 선전탑, 이취광고물 등을 금지

구분	색 채	형상크기	위치·계수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탕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며 특히 외벽과 보색관계나 색상 대비가 큰 것은 사용할 수 없음 •한 건물에 설치하는 여러간판은 같은 계통의 바탕색을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층별간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세로의 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들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돌출폭은 30cm이하로 하되, 층별 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설치 •변형간판은 입체형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업소당 1개만 설치 •건물의 3층이하의 판류, 입체형, 문자·도형부착 부착하며, 4층 이상은 입체형, 문자·도형으로 한다. 1층 부분은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
지주 이용 간판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단까지의 높이 : 10m이내 •1면의 면적(입체형일 경우 가장 넓은 편)10㎡ 이내로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는 40㎡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주출입구변에 2개 업소 이상 통합 연립형으로 1개를 설치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선 후퇴 부분의 전면공지 내에 설치금지 •보도의 경계로부터 50cm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로부터 100cm이상) 이격

구분	색 채	형상·크기	위치·계수
돌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탕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며 특히 외벽과 보색관계나 색상 대비가 큰 것은 사용할 수 없음 한 건물에 설치하는 여러간판은 같은 계통의 바탕색을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상단은 벽면높이 초과 금지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 금지 세로길이 상업지역30m 이내 간판두께는 50cm이내 이·미용업소 두께 : 지름 30cm이내, 길이150cm이내 벽면과 간판간격 필요시 30c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2개이상 업소가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에 위치 전면폭 10m이하인 건물은 한줄로, 10m 초과할 경우 초과시 한줄로 표시 부조건물, 가설 건축물은 표시 금지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개 공지	간선가로변 교차부	간선가로변 교차부	143㎡	위치 지정	
	간선가로변 교차부	간선가로변 교차부	125㎡	위치 지정	
	-	D 블럭 지하철 출구변	-	위치 지정	
	보행통로와 연결 되는 이면도로변	보행통로와 연결 되는 이면도로변	107㎡	107㎡	
공공 조경	C블록내 공공보행통로변	-	보행통로와 조화된 조경식재	-	의료시설로 용도 존치시에 한함
	-	B블록내 획지경계부	-	획지경계부 차폐식재 : 폭3m	

나. 대지내 통로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공 보행 통로	A블록내	-	동서방향 1개소: 폭 4m	-	이면블록의 공공보행통로 해제
	B블록내	획지경계부로 위치이동	동서방향 1개소: 폭 4m	동서방향 1개소: 폭 4m	획지계획에 따라 내부관통의 불합리성 보완
	C블록내	C블록내	남북방향 1개소: 폭 4m	남북방향 1개소: 폭4m	
지하철 연결통로	B블록	-	3개소	-	위치지정에 따른 경직성을 해소하되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한 자발적 연결 유도

주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피로티로 조성시에는 피로티부분의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다. 차량동선 및 주차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금지구간	동일로 및 화랑로변	동일로 및 화랑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일부 제외)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일부 제외)	-
	15m도로변	-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차량출입금지구간 폐지	화랑로변의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으로 인한 차량출입구 설치 필요
	-	공릉초교 전면 12m도로변	-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공릉초교 통학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
	-	A블록 4m 도로변	-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공릉초교 전면 12m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공릉초교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지정

라. 옥상녹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적합하게 조성	

4.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완화조건	산 정 기 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기본용적률 (150%)	• 2필지(획지) : a=0.2 • 3~4필지(획지) : a=0.3 • 5필지(획지) 이상 : a=0.4
	획지간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특정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특정층연면적) × 0.1	특정층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40%이상시 인정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 및 특정층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전층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본용적률 (150%)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본용적률 (150%)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본용적률 (150%)		
	추가계획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개방형구조 : a=1.2	

항 목		내 용	완화조건	산 정 기 준	비 고
대지내 통 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 개방형구조 : a=1.2 ※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 부여
		입체형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건축물형태 및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노원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지하철관련		지하철관련시설 대지내설치	기준용적률 × 0.15	※ 지하철관련시설(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등) 대지내 설치시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용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서울시 기준 적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서울시 기준 적용
건물내 일정공간을 보육시설로 공공에 제공할 경우			무상귀속시	기준용적률 × 0.3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150%)	

주 : 1. 기본용적률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의 차이가 200%이상인 경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획
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최고높이, 건축선, 공개공지 위치, 씬지침·
침상형공지 위치)준수시 부여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 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은 초과할 수 없다.
3. 대지내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 중복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추
가 건축선후퇴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
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경
미한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
방법의 변경
4. 수중·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
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
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
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관련도면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국 도시관리과(전화 : 6361-3934)
및 노원구 도시정비과(전화 : 950-3884)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 평균층수 반영
 - 제6장 부문별 계획 중
 - 3. 건축물의 밀도계획 ④ 건폐율, 층수, 경관계획
 - 2) 층수에 대한 기본원칙의 변경(7층 이하→평균 7층 이하, 12층 이하→평균 12층 이하)
 - 제7장 구역별 계획 중
 - 자치구 구역별 계획에서 정한 층수 변경 (층수→평균층수)
- ※ 단, 평균층수 적용은 구역별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정비예정구역의 변경 (구역변경 5, 구역추가1)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위 치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비 고
기정	B	9	서대문구 홍은동 11-111	1.6	170%	7층 이하	60%	1	재개발	구역확장 (2.9ha)
변경	B	9	서대문구 홍은동 11-111	4.5	변경없음					
기정	A	9	관악구 봉천동 1544-1	7.6	190%	12층 이하	60%	1	재개발	구역확장 (2.8ha)
변경	C	9	관악구 봉천동 1544-1	10.4	변경없음					
기정	A	16	영등포구 도림2동 162	3.7	210%	-	50%	2	재개발	구역확장 (1.6ha)
변경	A	16	영등포구 도림2동 162	5.3	변경없음					
신규	C	26	영등포구 신길동 190	10.6	190%	12층 이하	60%	2	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기정	A	50	동대문구 답십리동 12일대	5.3	190%	12층 이하	60%	1	재개발	구역분할
	A	50-1	동대문구 답십리동 25일대	3.6	변경없음					
	A	50-2	동대문구 답십리동 12일대	1.5	변경없음					
기정	뉴타운	1	동대문구 전농4동 204일대	11.8	190%	12층 이하	50%	1	재개발	구역분할
	뉴타운	1	동대문구 전농4동 204일대	9.3	변경없음					
	A	40	동대문구 전농4동 134일대	2.5	변경없음					

나. 변경사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평균층수 적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변경(구역확장 및 구역분할) 및 추가선정 하고자 함

다. 관계서류의 공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3~35,8297) 및 서대문구 도시개발과(☎ 330-1940), 관악구 주택과(☎ 880-3856), 영등포구 도시관리과(☎ 2670-3669),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1)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306	(주)퍼스텍엔지니어링 (정 이 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3-134 우림빌딩 501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2.23~07.1.22)
200212	해길정보통신(주) (최 숙 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4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2.23~07.1.22)
200048	아이피원(주) (박 균 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5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2.23~07.1.22)
111411	(주)호반텔레콤 (박 상 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7 하나로빌딩 1층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2.23~07.1.22)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20.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0145	동양네트워크(주) (김 종 렬)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5-30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06.12.22~07.1.5)
112447	(주)잔승이테크테크 (정 명 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22 알양빌딩 401호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06.12.22~07.1.21)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시행규칙 제23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19.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2816	아라리온(주) (정자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3동관 16층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취소
110928	(주)태원시스템 (백승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86-14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취소
111046	선우정보통신(주) (이성봉)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23-7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
 항, 제66조2의제3호, 제68조의3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22.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200222	인컴정보시스템 (노 현 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18 삼보빌딩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06.12.20~07.1.3)
113007	(주)크리스솔루션 (최 중 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5-27 호주빌딩 2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112969	(주)포젠포스 (김 철 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2-4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113035	홍간개발(주) (허 만 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7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113044	(주)아이필넷 (임 창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5층 509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046	(주)네오로드 (임 창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0-3 프라임빌딩 2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113060	(주)코텍정보기술 (김 영 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16-4 에스케이테크노빌딩 501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6.12.20~’07.3.19)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시행규칙 제23조
-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19.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

연번	지정검토종별	지정예정명칭	수량	재질	조성연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비고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유순정 초상 (柳順汀 肖像)	1점	비단에 채색	조선시대 (16세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성변등록 (星變謄錄)	1점	楮紙	조선시대 (18세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3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청동 금고 (靑銅 金鼓)	1점	청동	고려후기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A 1동 601호	전문법	

- 2.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71-2595
 - ② 팩스 : (02) 2171-2589
 - ③ 우편 :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5층
 - 성동구 문화공보과

- ① 전화 : (02)2286-5204
- ② 우편 : (133-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행당동 7)
- 종로구 문화진흥과
 - ① 전화 : (02)731-0359
 - ② 우편 : (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수송동 146-2)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330-1115
 - ② 우편 : (120-703)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연희로 165(연희동 168-6)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2171-2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1. 유순정 초상(柳順汀 肖像)

류순정(柳順汀, 1459~1512)은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지옹(智翁)이고, 목사 양(壤)의 아들로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7년 진사로 알성문과에 장원, 전직에 등용되었다. 1491년(성종22) 북정도원수 허종의 막하로서 야인 정벌에 종군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우고 돌아왔다. 뒤에 평안도 평사로 전임, 연산군 초에 헌납, 부응교, 집의, 사성을 역임, 의주목사를 거쳐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그 후 형조, 공조의 참판을 지내고 평안도관찰사, 이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에 승진하였다. 1506년(중종1)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으로 청주부원군에 봉해졌다. 이 해 우의정에 승진, 이듬해 병조판서를 겸하고, 이과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1등, 1509년(중종4)에 좌의정, 이듬해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로 군부를 지휘, 이어 직접 경상도 도원수로서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였다. 1512년 영의정이 되어 재직 중 죽었다. 시호는 무안(武安), 뒤에 문정(文定)으로 개시(改諡)

되었다.

유순정초상은 화폭이 연폭으로 결봉(結縫)되어 있다. 화폭에는 좌우에 찬문(贊文)이 적혀 있는데, 좌측에는 '성렬공 화상찬(成烈公畫像贊)'이라 하여 김상헌의 찬문을 9대손인 선(緜)이 적어 넣었으며, 우측에는 7대손인 식(寔)이 써넣은 찬문이 있다.

유순정초상은 사모에 청포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으로서 안면의 취각은 좌안7분면이며,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고, 바닥에는 채전이 깔려 있다. 이 상은 조선조 중기의 전형적인 공신도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유순정은 앞서 기술했듯이 중종반정시의 공로로 중종 원년 9월 8일 정국공신으로 책록되었으며, 또한 중종 2년 9월 6일에는 정난공신으로도 책록된다. 그러나 입각도형(立閣圖形)에 관련 기록은 중종 원년 9월 15일자에 나오므로 이 상은 정국공신상(靖國功臣像)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며, 이 점은 함께 정국공신호를 책록받았던 <이우상(李瑀像)>과도 동일한 상용형식을 보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 초상화는 공신도상의 전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상이다. 정국공신은 중종 원년(1506)에 책록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세조 13년(1467) 책록된 적개공신(敵愾功臣)과 1623년 책록된 정사공신(靖社功臣) 사이의 시기이다. 그런데 바로 이 유순정초상은 보물 502호 <장말손영정(張末孫影幀)>, 보물 1216호 <손소영정(孫昭影幀)> 등의 적개공신상(세조13년 책록되었으나 초상화의 제작은 1476년 경으로 추정됨)과 보물 1174호 <이중로영정(李重老影幀)>, 경기도 유형문화재 118호 <신경유영정(申景裕影幀)> (1623년경 제작) 등의 정사공신상간의 과도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공수(拱手) 자세나 의자에 방석을 붙들어 맨 형태, 단령(團領)의 트임 사이에 첩리와 내공(안감)이 겹겹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는 적

개공신상과 연접한 양식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밑에 깔린 진채로 처리된 채전의 등장과 청포단령의 외곽선이 적개공신상 보다는 부드러워진 점, 그리고 족좌대(足座臺)가 원근법에 위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정사공신상과의 유사점을 보여준다.

유순정초상은 안면표현법에서 화가의 절묘한 솜씨를 보여주는데, 먼저 열은 살색의 안색을 기조로 하여 이목구비를 갈색기 나는 선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술색은 옅은 적색을 띠어 후대의 검붉은 자주색과는 대조를 이룬다. 안면 전체에는 살뿔이 음영이 깔려 있는데, 원공(귓바퀴무늬) 역시 열은 갈색 선으로 처리하였다. 눈의 윗 꺼풀은 검은 묵선, 아랫 꺼풀은 갈색 선으로 아주 조심스럽고도 자연스럽게 형용하였다. 또한 <이중로영정>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열굴의 돌출한 부위에 홍색의 선염기가 약간 들어 있어 중기초상화의 기법을 예고해주며, 유순정의 마마 자옥 역시 피부결과 일체를 이루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출(寫出)해 내었다.

그런데 이 초상화에서 단령부분은 후대 가채(加彩)를 의심하게 하는데, 청색이 날 색에 가까우리만큼 질게 시채(施彩)되어 있다. 물론 이 가채는 근래에 칠해진 것은 아니며, 아마도 함께 보관되어 있는 윤상익(尹商翊) 이모본(반신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숙종 연간에 화폭의 보존을 위해 한번 보채(補彩)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옷 주름처리는 전혀 음영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묘만으로 처리하여 고식(古式)을 보여준다.

유순정초상은 현재 몇 점 전해오지 않는 16세기 초기의 작품으로서 조선조 공신상의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닥에 채전이 등장하는 최초의 예로서 주목된다.

2. 성변등록(星變謄錄)

책의 크기는 세로 33cm, 가로 22cm이

며 전후의 표지를 포함하여 39장이다. 표지에는 3행에 걸쳐 『雍正元年九月星變謄錄』, 『乾隆二十四年三月星變謄錄』, 『乾隆二十四年十二月客星謄錄年』 墨書되어 있다.

이 3건의 등록 중 첫 번째 건은 표지가 없이 바로 本文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2건은 『乾隆二十四年己卯三月初五日 星變謄錄』과 『乾隆二十四年己卯十二月二十三日 客星謄錄』이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표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천문현상을 관측한 3건의 독립된 등록을 후일에 합철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2번째 등록에는 조선시대 천문관측기관인 觀象監의 圖書인 '觀象監印'이 踏印되어 있어 관상감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등록은 성변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처리과정을 실측보고서인 측후단자 등을 토대로 재정리한 등록으로서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雍正元年九月星變謄錄』: 조선 景宗3년(1723) 9월 21일에 彗星이 출현해서 10월 17일에 사라지기까지 총 27일간의 관측기록.
- 『乾隆二十四年三月星變謄錄』: 조선 英祖 35년(1759)3월 5일 彗星이 출현하여 3월 29일 사라지기까지 25일간의 관측 및 처리기록.
- 『乾隆二十四年十二月客星謄錄年』: 조선 英祖 35년(1759) 12월 23일 客星이 출현하여 영조 36년 1월 3일 사라지기까지 4일간의 관측 및 처리기록.

각 등록의 記述은 측후관에 의하여 星變을 발견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과 星變測候廳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소요 물품의 조달, 측후 전문인력의 차출과 매일 매일의 星變의 변화를 그림과 함께 적은 星變測候單子의 순으로 되어 있다. 측후일마다 담당관원의 직명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각 등록의 최종일에는 천문관측에

참여한 전인원이 會同하고 참석자의 직함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등록은 조선시대의 천문학자들이 실제 관측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희귀한 자료라는 점과 관상감에 행해지는 측후의 과정 및 참여인원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한국의 과학사, 특히 천문학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평가된다.

3. 청동 금고(靑銅 金鼓)

이 금고는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일반적인 반자(半子) 형식의 금고이다. 형태를 살펴보면 전면인 고면(鼓面)에는 2개조의 용기동심원을 중심으로 당좌구(撞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의 3구획으로 나누었다. 가장 중앙인 당좌구는 연주문을 두른 원형 당좌를 배치하였는데, 당좌의 내부에는 연과를 중심으로 중엽의 연화를 둥글게 돌아가며 시문하였다. 이 연과 주위로는 13엽으로 이루어진 연판문을 시문하였는데 연판 내부에는 선문을 장식하였다.

중구에는 18엽으로 이루어진 단엽의 연판문을 다시 배치한 점이 독특하지만 외구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측면은 두께가 두터운 편으로서 상부 쪽에 치우쳐 3개의 반원형 고리가 달려있다. 측면의 한쪽에는 중앙의 용기선을 중심으로 좌우 2행의 36자의 음각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欄若寺判子 造成寺主重大師貞□ 東梁僧明合

乾統十一年辛卯三月日造 入重廿五斤

난야사 반자. 조성 사주는 중대사 정□이고 동량은 승 명합이다.

건통 11년 신묘 3월 어느 날 만들었으며 들어간(銅의) 무게는 25근이다.

명문 중에 난야사는 소재가 미상이며 고려시대 명문으로는 매우 단순한 형식으로 간

략히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문에 나오는 판자(判子)라는 명칭은 고려 12~13세기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지금까지 밝혀진 예로는 대덕(大德) 9년명 반자(1305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가 처음이면서도 유일하다. 그러므로 반자의 명칭은 지금까지 연구된 반자 명칭의 변화과정과 비교할 때 13세기까지 반자(盤子, 半子, 飯子)라는 명칭의 형식과 시대적인 양상과 맞지 않는 점이 의문시 된다.

“건통(乾統) 11년”은 요(遼) 나라 천조제(天祚帝)의 연호로 10년 동안(1101~10) 사용되었으므로 “건통 11년”은 이듬해인 1111년[천조제 천경 원년(天慶元年)]에 해당되고 이때는 고려 예종 6년에 해당된다.

이 금고의 명문상의 조성 시기와 양식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맞지 않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문양의 복잡하면서도 도식화된 모습이다. 고려 전기 금고에서는 볼 수 없는 연판문의 복잡하면서도 도식화된 모습과 중구에 배치된 또 하나의 단순한 단엽 연판문, 그리고 외구에 문양이 생략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측면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두터워진 두께와 후면의 정리되지 못한 주조의 흔적 등 고려 12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금고와 는 현격히 다른, 오히려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들과 형태와 문양에서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 12세기 제작된 작품이라기보다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볼 때 기록된 명문은 제작시기와 맞지 않는 후대의 위각(僞刻)이다.

이런 명문의 문제는 있지만 금고(金鼓) 자체는 고려후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며 상태도 좋다는 점에서 시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명	폐기일자	비고
심사평가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심사평가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명	폐기일자	비고
교통지도단속반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등록 규칙 9조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폐기사유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2. 직인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총무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기획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수상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운영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경영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치수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녹지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광나루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잠실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뚝섬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잠원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반포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이촌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여의도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신유도공원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양화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망원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난지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강서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총무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기획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수상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운영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경영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치수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설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녹지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광나루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잠실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뚝섬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잠원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반포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이촌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여의도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선유도공원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양화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망원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난지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강서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등록 규
칙 9조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폐기사유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
칭변경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명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2007.1.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0561	2006.12.27	(주)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 윤요현 110111-128365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2	200562	"	(주)아이에스티플러스 유봉수 110111-318476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5-7 청해빌딩 2층
3	200563	2006.12.28	(주)인텔씨앤씨정보통신 장용석 110111-3552670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67-12
4	200564	"	유지텔레콤(주) 오기호 110111-326656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1517호
5	200565	"	텔레캡서비스(주) 김동훈 110111-356302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6-6
6	200566	"	(주)에스케이케이블정보통신 윤석주 110111-355629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54 신트리테크노타운 706호
7	200567	"	(주)캡스텍 이철희 110111-314166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
8	200568	"	에이브이에스텍(주) 홍성열 110111-3563461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5-2 제우빌딩 201호
9	200569	"	양우건설(주) 고삼상 110111-061819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3-2
10	200570	"	아이앤비디지털홈(주) 권진웅 110111-3530725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9-24 대룡테크노타운1차 602호
11	200571	"	(주)일양전기통신 신영섭 110111-33816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65-1 양화빌딩 3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담당관실(02-6360-4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호
 마을버스 노선(관악09번) 폐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노선(관악09번)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폐지 대상 노선(관악09번) 운행계통

노선 번호	기점	운행 경로	종점	기점~종점까지 왕복운행거리(km)	운행 회수 (기점출발시간 및 배차간격)
관악09	신림12동 뉴서울A	신라놀이터~미성중학교~ 라이프A~난곡사거리~궁전회관	신대방역	5.6	첫차 06:00이전 막차 23:36 이후까지 배차간격 24분 이내

- 폐지 일자 : 2007.1.5
- 폐지 사유 : 난곡운수(주)에서 2002.9.13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노선폐지 신청 후 현재까지 미운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전화 : 6360-4557) 및 관악구 교통행정과(전화 : 880-39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감사관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평가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명	등록일자	비 고
교통지도단속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등록 규칙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일자 : 2007. 1. 2
2. 등 록 사 유 : 행정기구개편
3.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4. 등록 직인인명

등록직인명	인 명	등록직인명	인 명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명	등록직인명	인 명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관과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운영과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경영과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광나루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실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뚝섬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원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반포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이촌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여의도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선유도공원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양화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난지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강서지구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지인명	인 영	등록지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운영과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경영과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지인명	인 영	등록지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환경과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치수과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지인명	인 영	등록지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과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녹지와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지인명	인 영	등록지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광나루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실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지인명	인 영	등록지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뚝섬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원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반포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이촌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여의도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선유도공원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양화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난지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강서지구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	
<p>◆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p>		<p>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p>	

1.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광마케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관광마케팅담당관	관광마케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등록 규
칙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직인등록일자 : 2007. 1. 2
2. 등록사유 : 행정기구개편
3. 기관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4. 등록 직인인영

등록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장수권인	한글전서체 2.0cm*2.0cm		2007.1.2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148	(주)씨에스티씨 (김 현 숙)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0-59 다름라인빌딩 2층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56	한 넷 (박 한 용)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418 2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59	(주)신통전설 (심 성 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9-29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63	(주)광명제이씨 (김 정 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80-531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68	(주)인컴씨앤씨 (원 충 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2 나진상가 17동 나열 201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74	동덕정보통신(주) (조 범 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19 5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113178	(주)에이엔에스테크놀로지 (권 오 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64-2 진영빌딩 302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 3월 (‘06.12.27-’07.3.26)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14
조2항, 제66조, 시행규칙 제23조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388	(주)인스정보통신 (이 장 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1-10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부족)	등록취소
112675	(주)진정보통신 (김 진 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20-21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부족)	등록취소
111265	대신브로콤(주) (한 성 응)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우림비지센터 8층 801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 66조, 시행령 16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29.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직권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대 상 업 체			공제거래 해지일자	위 반 내 용	적용법규 (방문판매법)	처분내용 (처분일)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제380호	(주)하나원인터 내셔널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73-12	2006.12.5	소비자피해보상(공제거래) 계약해지후 재계약 미이행	○ 제25조 제3항 ○ 제34조 제1항	등록취소 (2006.12.21)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
 제과(☎ 3707-9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03.10.6~
 2006.12.10
 바. 공사준공도서 : 따로붙임(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중구고시 제2001-37호(2001.5.21)로 도
 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한
 『교통안전회관~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완
 료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6호
 서울 장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
 업 공사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76호(2000.12.
 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5호(2001.7.3)로 택지개발
 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31호
 (2002.8.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70호(2003.9.19)로 택지개
 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4
 호(2005.12.8)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7
 호(2006.12.1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서울 장월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교통안전회관
 ~성동구경계(중구구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 칭 : 교통안전회관~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폭 12~15 → 25m,
 연장 4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1. 사업의 명칭 : 서울 장월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SH공사 사장 이철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나.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304번지 및 노원구 월계동 871-3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1,899.0㎡ (15,699평)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51,899.0	100.0	
주택건설용지	28,526.2	55.0	
공동주택	24,400.3	47.0	
근린생활시설	4,125.9	8.0	
공공시설용지	23,372.8	45.0	
도 로	9,989.8	19.3	
근린공원	603.5	1.2	
학교시설	6,604.0	12.7	
종교시설	1,508.3	2.9	
공공시설	1,106.0	2.1	
주유소	1,655.4	3.2	
차고지	1,905.8	3.6	

5. 준공일자 : 2006. 12. 22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계	51,899.0		
주택건설용지	28,526.2		
공동주택	24,400.3	SH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공급
근린생활시설	4,125.9	SH공사	
공공시설용지	23,372.8		
도 로	9,989.8	SH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603.5	SH공사	

구 분	면 적(m ²)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학교시설	6,604.0	SH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공급
종교시설	1,508.3	SH공사	
공공시설	1,106.0	SH공사	
주유소	1,655.4	SH공사	
차고지	1,905.8	SH공사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공공시설의 명세서 생략)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 리 처 분
도 로	폭 2~14m, 연장 1,259m, 6개노선	9,989.8m ²	본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2개소	603.5m ²	본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귀속
상수도	도로 등 지하에 개설	1,088m	본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귀속
하수도	도로 등 지하에 개설(우수관로, 오수관로)	1,897m	본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귀속

7.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577), SH공사 사업3본부 개발계획팀(☎ 3410-740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9호
대부업자 소재지 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소재지 확인 공고
2. 공고기간 : 2007. 1. 9. ~ 2007. 2. 12.
3. 공고대상 : KS컨설팅 최춘환외216개업체 (대상업체 명단 : 따로붙임)
4. 공고내용

가. 해당 대부업자 또는 임직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서울특별시(생활경제과)에 이의제기(소재지 통지 등) 하

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면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같은법률 제4조)

다. 또한, 같은법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업 변경(소재지 등)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1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생활경제과, ☎ 02-3707-9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반송 소재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1	8350	KS컨설팅	최춘환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5. 골드마인 3층	수미
2	8349	새롬컨설팅	이윤범	134-020	서울 강동구 천호동 50-14	수미
3	8345	대한상사	한경희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349-2 선진빌딩 302호	수불
4	8339	한국투자금융	신승호	137-072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19-11 강남두산베어스텔 1107호	수미
5	8335	(주)티켓모아	홍영숙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12 고운빌딩 4층	수미
6	8332	(주)에스디솔루션비즈	최수동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7 청명빌딩 3층	이사감
7	8296	명진유통	김종귀	136-11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70-24 태창B/D 4층	수미
8	8243	메가박스	김대운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번지 101-2호	이사감
9	8231	오토캐피탈	엄은영	150-071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879-2 태성빌딩 206호	수미
10	8214	승리	손철권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6 논현오피스텔 317호	수미
11	8202	3040loan	김명익	152-055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4-10 동남오피스텔 910호	수미
12	8193	현대투자금융	장권수	138-220	서울 송파구 삼성동 22-10 302	불명
13	8177	YJLOAN	심재영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빌딩 1711호	수미
14	8164	월드	전성진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16. 305호	이사감
15	8154	폴드팩스론	이순호	133-170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6 용성빌딩 205호	수미
16	8150	에스엔제이	신동희	142-103	서울 강북구 미아3동 224번지. 1층 1호	주불
17	8134	원광	박민철	150-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0-26	주불
18	8129	신덕상사	강선희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45. 1층 201호	수미
19	8118	(주)우성알티에이	송혜경	151-080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2-47 예촌A 씨동 102호	이사감
20	8116	그린	천지훈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2-3 송원B/D 401호	수미
21	8109	무등	안효연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1-3 진영빌딩 3층	불명
22	8108	네오컨설팅	양대성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1-3 진영B/D 3층	불명
23	8101	일신사	신희운	100-060	서울 중구 남창동 46 -13.15호. 3층	수부
24	8073	현대기획	손무정	134-010	서울 강동구 길동 416-4 솔목오피스텔 201호	불명
25	8052	케이론	최재익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1906호	수미
26	8044	(주)지티캐피탈	양승춘	110-1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27층)	수미
27	7992	(주)해광캐피탈	강기진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405-6 동명B/D 2층	수미
28	7909	금강씨티디벨로프(주)	이유섭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11 등우빌딩 3층	수미
29	7901	아인인베스트	김병구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 극동B/D 602호	이사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30	7858	대륜	김태형	136-075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33-6 노산빌딩 405호	이사감
31	7853	대신파이낸스	조운찬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14 세영빌딩 (지층)	수미
32	7851	(주)사이버알닷컴 (양재역지점)	서재일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27-2 지하철3호선 양재역 제332-08호	수미
33	7848	강남대부	이수정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2 마일스디오빌 -503	수미
34	7843	한양캐피탈	이예자	142-071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5 대림상가 2층 220호	수미
35	7842	신흥개발	유혜선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4 I-SPACE2 1513호	불명
36	7831	스마일	이용재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3 대림아크로텔 325호	수미
37	7823	명성	김현자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1 벽산㉠ 단지내상가 109동 229호	수미
38	7820	동아투자	오귀덕	120-11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6-26	수미
39	7802	이정원	이정원	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503-52	이사감
40	7794	다성	박해조	157-011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7-7. 1층	수미
41	7782	나라대부	이명순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913호	수미
42	7778	현대대부	정백수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직판 (라동 212호)	불명
43	7763	거성	박정순	132-02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9-2 현대렉시온 1229호	수미
44	7750	원앤지이코노미	김복희	110-070	서울 종로구 내수동 95번지 삼성파크펠리스 1층 109호	이사감
45	7749	에스원금융	이광욱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0. 1013호	수미
46	7741	한국금융정보	이지홍	135-70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5-1. 빅토리아빌딩 1304호	수미
47	7731	선경	채정병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4-2 경덕빌딩 201호	수미
48	7722	푸른자산관리 주식회사	이혜옥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110-6 그랑빌 802호	수미
49	7721	박애진	박애진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주불
50	7667	(주)크리엔터테인먼트	윤영선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엘지에클리트 5층	주불
51	7610	(주)자바론	이은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4 한덕빌딩 303호	이사감
52	7587	(주)지나텔	이승용	140-112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1-32 (고당빌딩 501호)	이사감
53	7582	라이프코리아	최윤석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1914호	이사감
54	7573	동아인터내셔널	김만순	139-051	서울 노원구 월계1동 493-1 진안빌딩 6층2호	이사감
55	7565	매직캐피탈	김현철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0 금원B/D 103호	이사감
56	7533	금천상사	양청진	110-540	서울 종로구 창신동 424-4	이사감
57	7528	호산나투자금융	이재형	130-0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2. 우창프라자 지하2-17-2	수미
58	7513	채원상사	박상진	110-540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쌍용㉠ 204-407	수미
59	7502	베스트론	문수영	134-022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32-10 쌍용플래티늄리버 311호	이사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60	7498	도도기획	송정열	143-220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9-2 거산B/D 4층	이사감
61	7492	(주)메다비에이엔케이	이창건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8 미래사옥 13층	이사감
62	7491	캐쉬방	서옥자	131-120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5-11. 305	이사감
63	7471	K.B크레딧	여운창	138-170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4. 2층	수미
64	7469	현대정보	박성식	143-2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104 송산빌딩 202호	수미
65	7444	friend- loan	이태학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2-14. 301호	이사감
66	7433	동경상사	박용삼	151-057	서울 관악구 봉천7동 854-13. B1층	수미
67	7425	우진상사	이우용	120-13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3-52 (1층)	이사감
68	7403	한솔	강구선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4 LG에클라트 702호	수미
69	7385	금정투자	배인수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9 삼화B/D 503호	수미
70	7379	(주)삼화투자금융	장도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9 삼화빌딩 503호	수미
71	7312	엘에스파이넬설	양동진	110-540	서울 종로구 창신동 424-4	이사감
72	7305	한솔캐피탈	고유진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 역삼벤처텔 514호	수미
73	7303	파이넬설코리아	김은식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번지. 916호	수미
74	7300	제일신용대출	김월영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3 대치대우아이빌 335호(명분가)	이사감
75	7298	현도물산	김기남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16. 1005호	수미
76	7288	보성기획	신복근	132-040	서울 도봉구 창동 623-49	주불
77	7284	우성사	우영주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93 불암현대A 104-2206	이사감
78	7276	(주)모빌랜드	서문기	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4 캐릭터그린빌 809호	수미
79	7271	스타론	문희경	133-170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3-2 원광빌딩 502호	이사감
80	7257	홍성민	홍성민	130-035	서울 동대문구 답사리5동 493-5 클래식타워 609호	수미
81	7252	대도기획	최용규	139-050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1 사슴A 107-402	이사감
82	7224	수서상사	추원자	122-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0-247 동성주택 1층 101호	이사감
83	7219	부원개발	민병욱	142-1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4-7 4층 401호	수부
84	7216	한국건설금융	박영민	133-170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2-6.2층	이사감
85	7130	한솔캐피탈	이진효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3 (선능아크로텔 324호)	수미
86	7126	아름상사	조현애	135-1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삼성청담공원A 105-303	이사감
87	7123	모든금융	이정희	133-837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16. 센스빌 403호	이사감
88	7117	믿음상사	차홍수	130-02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1-45	이사감
89	7115	현대크레디트	송명희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1-7 합동빌딩 5층 웨르빌고시텔 (9호)	수부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90	7091	수진인베스트먼트	이명호	100-021	서울 중구 명동1가 60 개양B/D 1303호	불명
91	7079	유진	박종섭	130-06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6	주불
92	7061	하드컨설팅	김기선	134-010	서울 강동구 길동 413-1 탑스위트 상가 201호 (빈사무실)	수미
93	7000	현대투자금융	성기희	152-056	서울 구로구 구로6동 98-16호 현대 701호	이사감
94	6987	상아컨설팅	윤홍덕	133-12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302-2	이사감
95	6967	미래F&C	양성욱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2-173 삼창프라자 1254호	수부
96	6912	삼정상사	박용순	100-080	서울 중구 북창동 89. 도서빌딩 305호	수미
97	6875	성지기획	김중환	140-210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5. -301	이사감
98	6820	구이	구상모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9 주공㉠ 314-105	이사감
99	6814	모닝트라이	변영구	137-072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2107호	이사감
100	6797	두리	송혜진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38-12 (재건축 중)	수미
101	6760	해광상사	최창문	130-11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동은B/D 지층	수미
102	6759	부국상사	박영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주불
103	6746	미래금융정보	박은규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피닉스B/D 702호	수미
104	6738	한솔머니	최진석	142-879	서울 강북구 수유2동 266-3. 3층 302호	이사감
105	6729	제이엔에스	장광주	143-220	서울 광진구 증곡동 639-2 거산빌딩 312호	이사감
106	6719	(주)대중인베스트먼트	이장섭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8-12. 5층	이사감
107	6697	신한자동차금융	이광재	157-033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80-2 동우빌딩 507호	이사감
108	6695	(주)비엠씨솔루션	배석영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4	수미
109	6679	JWORLD	이석준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4 트윈타워오피스텔 B-1102	수미
110	6668	에프씨멤버스	이주복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7 목화밀라트오피스텔 13층 1305호	수미
111	6663	부영캐피탈	김민수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립 E-Biz센터II 407호 6실	수미
112	6651	론인포메이션	지운환	133-850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3-2 원광빌딩 506호	이사감
113	6650	유진론	고재근	137-743	서울 서초구 잠원동 37-12. 논현빌딩 601호	수불
114	6644	성우	김상욱	100-19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3 한양빌딩 503호	이사감
115	6639	대운유통	이상범	157-922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8-49	수미
116	6634	(주)두앤두인베스트먼트	하상규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본관 205호	이사감
117	6633	월드케이싱	엄숙경	100-271	서울 중구 필동1가 21-9 동화빌딩 118호	수미
118	6632	에은	김용성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2 봄날아침 B/D 4층	수미
119	6625	(주)해피웨이	박혜린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수불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120	6618	한신	한광선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6-13. 201호	수미
121	6609	골드상사	김원영	136-150	서울 성북구 석관동 135-2. 206호	수미
122	6606	캐피론	임상우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0 금양빌딩 408	이사감
123	6595	청운컨설팅	최영교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아파트상가 121호	이사감
124	6593	대신기획	서창배	151-0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0-5. 2층	이사감
125	6584	스스론	김도연	157-922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8-50	수미
126	6582	CONY	김경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50-1 파고다빌딩 603호	불명
127	6573	화인금융	강태석	130-811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8 삼화빌딩 401호	이사감
128	6563	씨엘소프트㈜	조한섭	143-819	서울 광진구 구의2동 78-4 새서울빌딩 2층	수미
129	6554	기행상사	조철행	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9 동환B/D 5층 516호	수미
130	6532	델타론	강성오	100-810	서울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회관 913호	이사감
131	6516	도원컨설팅	김오례	100-84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3 한양빌딩 607호	이사감
132	6515	현대	김정민	135-884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수서현대벤처빌 -716	불명
133	6512	모아캐피탈	배정순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대진빌딩 305호	수미
134	6511	가람캐피탈	구경수	157-923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063-8 서안이지텔 802호	수미
135	6506	제이엔리캐피탈	장상돈	110-111	서울 종로구 관철동 43-8	이사감
136	6483	해광금융	정은열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텔 519호	이사감
137	6468	영진사	조영진	100-835	서울 중구 신당동 432-657 명경A -403	이사감
138	6435	e지론(이지론)	나경환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7층 711호	이사감
139	6378	영캐시	방경임	150-03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4 동남상가 2층 230호	불명
140	6374	태영캐피탈	노광수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4-24 동방빌딩 3층	이사감
141	6372	(주)정화아이앤씨	손정숙	134-010	서울 강동구 길동 391-1 한일빌딩 3층	수미
142	6358	영진캐피탈	유진호	137-902	서울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406호	수미
143	6357	한국금융	최상언	131-858	서울 중랑구 상봉2동 92-2 시네마씨티 1308호	수미
144	6343	한솔크레디트	김도균	100-271	서울 중구 필동1가 22-2 스타빌딩 1005호	이사감
145	6341	선호금융	김기선	157-220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A 407-904	수미
146	6327	(주)조은넷피아	문희선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2 목화밀라트 1802호	이사감
147	6311	동아	장은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B/D 707호	수미
148	6305	정우기획	정수철	143-220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9-2 지산빌딩 313	이사감
149	6291	스피드홈	안명렬	121-885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3. 205호	이사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150	6271	신한파이낸셜	박면규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506호	수미
151	6270	그린코리아	김덕울	143-838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7-21 406호	불명
152	6267	협성	이동하	131-231	서울 중랑구 망우1동 563-1	이사감
153	6230	(주)뱅크온뱅크	문석주	135-87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0-10 케이엠빌딩 1층	이사감
154	6219	(주)장흥개발	정평호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3층)	수미
155	6211	A&I	주재귀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3 세화B/D 505호	수미
156	6208	(주)한울씨엔아이	조난주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1. 대우아이빌 1019호	수미
157	6205	론텍	현정섭	157-921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030. 305호	수미
158	6202	나우	이송호	100-84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3 한양B/D 503호	이사감
159	6183	삼성론스타	김정희	100-864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 - 7	수미
160	6135	현대	김상철	135-884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716호	불명
161	6133	한국기업금융자문(주)	박행수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9층	이사감
162	6115	한빛베스텍	백건옥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 대우디오스빌 2012호	수미
163	6114	의진	유재범	100-84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3	수미
164	6100	제이캐피탈	김미정	133-826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31-1	수미
165	6094	푸른솔에셋	정금억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	이사감
166	6089	대성캐피탈	권영수	100-84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8	이사감
167	6084	월드BK	이가영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563-12	수미
168	6078	갯머니	김태환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 르메이에르타운2 614호	이사감
169	6071	기프트윈플러스	김배중	137-905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4	수미
170	6067	종합상품권	이광석	122-010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7-141	주불
171	6062	(주)와이씨론	김영욱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6 나신빌딩 303호	이사감
172	6051	기업씨엔씨(주)	서상원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2 현민타워 7층	수불
173	6049	이에스크레디트	강철용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6-34 건혁센타 2층	수불
174	6030	원상품권 도소매	원이수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25 선릉B/D 1F	이사감
175	6021	엠앤엔크레디트	문용진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1-5. 210호	이사감
176	6018	자연	김영필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B/D 1701호	이사감
177	6012	나눔닷컴	김경석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7 목화빌라트 -312	수미
178	5989	머니닥터	손경희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25 유성빌딩 401호	이사감
179	5962	대한금융	김화기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4 공덕B/D 302호	이사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180	5919	정평	박석기	130-0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0 동아A 101-1107	이사감
181	5912	금정투자	김재동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9 삼화B/D 503호	수미
182	5897	럭셔리나인	박승우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0-13 로이빌딩 3F	이사감
183	5884	대신	정순하	134-023	서울 강동구 천호3동 410-105 3층1호	수미
184	5863	GM인터내셔널	최영복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2. 디오빌프라이프 307호	수미
185	5827	런머니	전정기	122-070	서울 은평구 역촌동 14-7 선진상가 2층	수미
186	5824	명성	주승희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세상에이팩스타워 211호	이사감
187	5822	플러스II	이영애	157-0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4 3층 302호	수미
188	5818	수색금융	배성곤	122-090	서울 은평구 수색동 144-3 2층	수미
189	5796	삼우개발	이희진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2	수미
190	5765	영민 금융 개발	조효숙	131-200	서울 중랑구 면목동 550-41	수부
191	6006	선우컨설팅	김금석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2 마일스튜디오빌 412호	수미
192	7687	KT소프트	박숙희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4 크레신타워 1412호	수미
193	7688	KT서비스	편종필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4 크레신타워 1412호	수미
194	852	굿모닝CSC	최설아	130-81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89-53 동은오피스텔 10층 1003호	수취인 미거주
195	3679	한성상사	김한기	110-550	서울 중구 신당동 142-5호 A동 201호	수취인 미거주
196	4322	리취머니	김기은	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464-8	수취인 미거주
197	4797	태흥금융	김민경	130-838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286-1	수취인 미거주
198	4815	씨엔엠	허만호	122-910	서울 은평구 은암동 111-1호	주소불명
199	6213	대호실업	박철구	130-823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54-29 한승빌딩 306호	이사감
200	6554	기행상사	조철행	130-823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415-9 동환빌딩 5층 516호	이사감
201	6701	디엠	박성락	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462-1	수취인 미거주
202	6760	해광상사	최창문	130-11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동은빌딩 지층	수취인 미거주
203	6882	우리컨설팅	조백기	139-200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963	수취인 부재
204	7115	현대크레디트	송명희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1-7호 합동빌딩 5층 웨르빌고시텔 9호	수취인 미거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우편번호	소 재 지	비 고
205	7304	명실업	이명희	122-010	서울 은평구 은암동 71-9호	주소불명
206	8122	누리	김낙규	130-01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35-4 미주상가 A동 408호	이사감
207	8325	스피드대부	박영선	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216-26	수취인 부재
208	6347	루디아금융	정재열	120-84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207호 (304호)	
209	1197	서부투자	김병준	122-907	서울 은평구 응암동 96-1호	
210	5774	코리아펄	안준달	120-090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6-16호	
211	3044	재현컨설팅	송형곤	132-02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9-2호 북한산 현대 렉시온오피스텔 508호	
212	727	성원상사	황호중	131-220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1-54 2층	
213	4045	미래기획	양현석	131-140	서울 중랑구 묵동 239-124 (3층) 202호	
214	7491	캐쉬방	서욱자	131-120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5-11. 305호	
215	7413	오은정	오은정	136-090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342 청한상가 301호	
216	3255	탐빈	김규홍	131-220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85 재정빌딩 2층	
217	5526	한국소비자금융	정윤재	131-220	서울 중랑구 상봉동 92-2 시네마시티 70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
전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
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
분 이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번호	명 칭(성명)	주 소	
113165	케이웨더(주) 김 동 식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2가 2-2 충정빌딩 3층	등록기준 미신고
110972	세종파워콤(주) 김 경 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23-7 에원빌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200158	(주)대연정보통신 (강 성 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8-22 B01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200277	(주)만코에스비엘 (조 중 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80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4.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 | 록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 : 염영자 전자우편 yomyj@lycos.co.kr)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 별관3동(☎ 02-6360-4991,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7. 1. 18(목)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02-6360-4991, 염영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7호

산지유통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에게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거나 지정된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처분의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유통인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등록번호	성명	주소			
서울03-2-1258	코리아에이에프(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가동 2층 3호	지방세 체납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6. 청문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농수산유통과, 담당자 : 김기중)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02-3707-9394)
- 일 시 : 2007. 1. 26(금) 09:00~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1동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 주재자 : 농수산유통과 김동원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행정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행정과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3호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규정관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미이행하였기에 우리 시는 같은법 제81조 제2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하고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이사, 미수취)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불가능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실

1. 처분일자 : 2006.11.27(월)

2.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67호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1. 처분 대상 및 내용

업체명·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갑을공영종합건설(주) 김명기	건축공사업 010182	서초구 양재동 209-5(정일빌딩) (137-13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12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세림리오빌 이충현, 김영재	토목건축공사업 2538	송파구 방이동 67(오선빌딩 401호) (138-05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12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2.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3. 처분근거 : 같은법 제81조 제2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02) 3707-9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1.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3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되니 2007.1.18(목)까지 우리 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5호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규정관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미이행하였기에 우리 시는 같은법 제81조 제2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하고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이사, 미수취)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불가능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실
1. 공고일자 : 2006.12.11(월)

2.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29호

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1. 처분 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삼익산업개발(주) 유근우	건축공사업 010433	양천구 신월동 537-15 (158-84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을미건설(주) 박병준	건축공사업 050043	강남구 논현동 202 (135-545)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부림건설산업(주) 이흥태	건축공사업 010126	강남구 역삼1동 840-12 401호 (135-936)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지오에스건설(주) 박옥석	건축공사업 011654	강남구 역삼1동 809-11 (135-931)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연지산업 오인석	건축공사업 010164	양천구 목1동 405-251 (158-806)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방주종합건설(주) 이성룡	건축공사업 10033	양천구 신월7동 995-7 (158-09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삼유종합건설 정정채	건축공사업 010253	강동구 성내동 542-3 (134-03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업체명·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주)한아름종합건설 김일현	건축공사업 010327	강동구 성내1동 557-5 (134-851)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재왕종합건설 김주영	건축공사업 010138	강동구 천호동 49-16 (134-02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평생기업 이강오	토목건축공사업 010011	강동구 천호4동 287-10 (134-867)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티엠엘종합건설(주) 강환국	건축공사업 101242	구로구 가리봉1동 89-165 (152-80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주)에디폴 윤상돈	건축공사업 011833	강남구 삼성1동 157-3 (135-880)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06.12.29까지 주기적신고 이행)

2. 위반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3. 처분근거: 같은법 제81조 제2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02) 3707-9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1.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3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되니 2007.1.22(월)까지 우리 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조직정비('07.1.2)에 의거 정산정보센터가 교통정보센터로 명칭변경되는 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정보센터 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7조에 의거 조정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폐기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일자	폐기사유
정산정보센터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직제 명칭변경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교통정보센터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1.2	직제명칭변경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

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이사, 부재, 미거주)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건설행정과-

시행일 2007. 1.

수 신 (주)멘토 대표이사 김경순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 등록말소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멘토 대표 김경순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5(상진지오벨리 2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박일수 2004.3.10~2005. 1.22) (장재인 2004.10.1~2004.12.21, 2005.3.2~현재) 2004.12.2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시 기술자 미달(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 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제2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조 우 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번호	3707-9647
	일 시	2007년 1월 22(월) 18시까지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장태중, 한홍재				

서울특별시장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82호

2007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2007년도 각급학교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공고하오니 각급학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07년 교육지원 지원대상 사업

(총사업비 : 48,826백만원)

가.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사업 43,938백만원

(1) 학습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

(가) 노후 책·결상 교체사업 12,391백

만원

(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17,925백만원
(다) 교실 내 철관 교체사업 8,422백만원

(2) 학습프로그램 사업

(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2,200백만원

(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3,000백만원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975백만원

② 서울시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1,000백만원

③ 서울시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사업 1,025백만원

나.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 4,888백만원

2.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서울소재 각급학교

3. 사업별 신청·접수 및 지원금액

사업	구 분	신청 자격	접수기간(접수처)	지원 금액	비 고
가	교실 내 철관 교체사업	서울소재 고등학교	'07.1.12.(금)~1.23.(화)(12일간)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기준단가(200만원) × 학교 내 학습수	사업(가) 중 한개 사업 동시신청 가능
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서울소재 초·중학교	'07.1.12.(금)~1.23.(화)(12일간)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고용등급에 따라 1개교당 5천만원 이내	타 사업 신청 불가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수준별 보충학습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	'07.1.12.(금)~2.20.(화)(40일간) [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프로그램당 1천만원 (1개 프로그램만 지원)	사업(가) 동시신청 가능 ※ 고등학교의 경우 사업(가) 동시신청 가능

사업	구 분	신 청 자 격	접수기간(접수처)	지 원 금 액	비 고															
☎	서울시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	'07.1.12.(금)~1.29.(월)(18일간) [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1개교당 2천만원	사업④ 동시 신청 가능 ※ 고등학교의 경우 사업②,④ 동시신청 가능															
<p>※ 책·결상 교체, 화장실 개선사업, 서울시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사업(시교육청 이관예정) 및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은 금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p> <p>4. 지원방법(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①</td> <td style="width: 20%;">②</td> <td style="width: 20%;">③</td> <td style="width: 20%;">④</td> <td style="width: 20%;">⑤</td> </tr> <tr> <td>교육지원 사업공고</td> <td>⇒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td> <td>⇒ 지원대상학교 (1차심사)</td> <td>⇒ 지원학교 ·사업 등 확정 (2차심사)</td> <td>⇒ 예산집행</td> </tr> <tr> <td>(서울시)</td> <td>(시교육청)</td> <td>(서울시 교육실무 협의회)</td> <td>(서울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td> <td>(시교육청)</td> </tr> </table> <p>5. 제출서류</p> <p>(1) 사업 신청서 및 학교별 현황</p> <p>(2) 사업 계획서</p> <p>※ 제출서류 양식은 시교육청 접수부서에서 각급학교에 공문발송</p> <p>6. 심사결과 발표(예정)</p> <p>(1) 2007. 2. 28.(수) 시교육청을 통해 지원여부 개별 공문발송</p> <p>※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2007.3. 30.(금) 시교육청을 통해 개별 공문 발송</p> <p>7. 기타사항</p> <p>(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시교육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서울시청을지로별관 3층 http://www.seoul.go.kr)</p> <p>- 교육기획관 교육지원반 ☎ 2171-2536, 2537</p> <p>○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번지 http://www.sen.go.kr)</p> <p>- 교육시설과 ☎ 3999-457(책·결상), 454(화장실, 첩판)</p> <p style="text-align: right;">- 초등교육정책과 ☎ 3999-358 - 교육과정정책과 ☎ 3999-406(방과후학교 프로그램), 379(방과후학교 시범학교), 367(원어민교사 배치)</p>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사업공고	⇒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학교 (1차심사)	⇒ 지원학교 ·사업 등 확정 (2차심사)	⇒ 예산집행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실무 협의회)	(서울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시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사업공고	⇒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학교 (1차심사)	⇒ 지원학교 ·사업 등 확정 (2차심사)	⇒ 예산집행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실무 협의회)	(서울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시교육청)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0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중구공고 제2006-571호(2006.1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및 서울중구고시 제2006-69호(2006.1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필동1가 24-6~24-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2260-4038) 및 건설관리과(☎ 2260-14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규 모	사 업 기 간	시설결정고시
필동1가 24-6~24-2간	- 도시계획사업(도로) - 필동1가 24-6~24-2간 도로개설공사	폭 6m 연장 58m	실시계획고시일 부터~2007.12.31	서중고 제13호 (2006.03.16)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위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2260-4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 공사명 : 필동1가 24-6~24-2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당 초								변 경								
연 번	소재지	영업 종류	상영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소재지	영업 종류	상영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종류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 중구 필동1가 24-27	도로	수량 확원	1식 박현우	서울 중구 예동 2-11				변 경 없 음							
2	서울 중구 필동1가 24-29	제조업	동량	1식 김우진	서울 영등포구 당동 5가 121차(상) 101-504 381호				변 경 없 음							
3	서울 중구 필동1가 24-30	제조업	제일 문화사	1식 김옥균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5-22				서울 중구 필동1가 24-30	제조업	제일 문화사	1식 김옥균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72-49			

당 초							변 경											
연 번	소재 지	영업 종류	상업 수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 지	영업 종류	상업 수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주주	성명	주소	주주				성명	주소	주주	성명	주소	주주
4	서울중구 팔당가 2431	소매	하류 식품	식 장비	강도성 상안동8749					서울중구 팔당가 2431	소매	하류 식품	식 장비	서울중구 팔당가2431				
5	누 락							서울중구 팔당가 2430	소매 업	상도 상사	식 장비	서울중구 팔당가2430						

◆ 동대문구고시 제2007-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6-93(2006.10.26)호로 결정된 동대문구 장안동 339번지 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착오 산정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339-8호	809.4	감)4.5	804.9	2006.10.26	단순면적 정정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4.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127-4943)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 2127-4496)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2127-491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동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920-3773)에 비치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 성북구고시 제2007-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74호(2003.11.18)호로 지구지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 1) 지 구 명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일대
- 3) 면 적 : 315,000m²

나. 제한사유

2003.11.18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2005.4 개발기본계획 수립, 2006.2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중으로 실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함.

다.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2년 (2007.01.~2009.01)

※ 실시계획 결정시 제한 해제예정

라. 제한대상행위

-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 3)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4)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마. 제한예외대상

-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3) 다음 각호의 사항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 범위 이내로의 변경

나)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다)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4) 다음 각호의 사항중 구청장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주택건설사업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바.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 비치도서와 같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109호 공공공지 및 홍제동 313번지 일대의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시행령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공공공지 : 홍제초등학교 담장과 연결한 토지로서 학생들 통학로 확보와 소공원 조성 및 담장 개방녹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결정
- 도로 : 홍제동 313번지 일대의 인구 및 차량 증가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차량 소통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가. 결정 취지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도로) 결정조서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	비 고
신 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48-109호	43	-	건물1동 (학교담장 녹화사업)

도 로

구분	규 모				연장 (m)	가능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류		4	150	국지도로	홍제1동 307-12호	홍제1동 313-20호	일반도로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강서구고시 제200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01(2006.3.23) 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경

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건설공사』를 추진중 방화로~올림픽대로 접속도로 구간의 도로폭원 일부가 미 확보되어 이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경미한 변경(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광로	3	19	40~120	주간선 도로	35,096	삼전동	방화동 53-1	일반도로	-	1971. 4.7	
변경	광로	3	19	40~120	주간선 도로	35,096	삼전동	방화동 53-1	일반도로	-		방화로~올림픽 대로간 일부 폭원확보

나.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광 장	교통광장	강서구 방화동 53-2일대	86,953	증)749	87,702	'97.4.22	방화로~올림픽 대로간 일부 폭원 확보

- 3. 관계도면 : 생략(강서구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시계획과 (☎ 2600-6843) 및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3708-2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고시 제2007-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6-70호(2006. 7.1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공사 시행중인 외발산동 412-7~27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2.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공람 및 열람은 생략하고,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7년 1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외발산동 412-7~275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외발산동 412-7~275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개설 폭 8m, 연장
148m(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1)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호
 - 2)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터~2007년 6월 30일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서 : 별첨조서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조서
-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
2600-67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외발산동 412-7~275간 도로개설공사

비고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당초	1	외발산동 273	답	1,825	10	소미자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18-2			
변경	1	외발산동 273-1	답	10	10	소미자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18-2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당초	2	외발산동 274	답	4,536	19	심호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94-1			
						정호남	서울시 강서구 786-9대림빌라 302			
변경	2	외발산동 274-1	답	19	19	심호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94-1			
						정호남	서울시 강서구 786-9대림빌라 302			
당초	3	외발산동 275	답	4,182	315	영인운수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16-107			
변경	3	외발산동 275-2	답	237	237	"	"			
변경	3	외발산동 275-3	답	78	78	"	"			
당초	4	외발산동 254-1	잡	41,555	20	국방부				
변경	4	외발산동 254-2	잡	20	20	"				
당초	5	외발산동 255-1	잡	29,338	68	국방부				
변경	5	외발산동 255-6,7	잡	68	68	"				
당초	6	외발산동 412-7	구거	951	784	건설교통부				
변경	6	외발산동 412-7	구거	784	784	"				
당초	7	외발산동 411-43	도	2,647	228	건설교통부				
변경	7	외발산동 411-46	도	228	228	"				
당초	8	외발산동 415-2	도	2,577	44	건설교통부				
변경	8	외발산동 415-7	도	44	44	"				

◆ 영등포구고시 제200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6-770호(2006.10.25) 및 제2006-872호(2006.11.28)로 열람 공고한 우리구 관내 문래동6가 25-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2670-36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 설	공공공지	문래동6가 25-1	1,954.7	

나. 관련도면 : 생략(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 동작구고시 제2007-2호

장미연립재건축조합사업 공사완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58550-2125(2002.5.10)호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시 제2003-71호(2003.6.30)로 사업시행 인가된 장미연립재건축조합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완료되었기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3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 공사완료 내역

-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장미연립재건축조합
- 다.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81-1호외 9필지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① 장미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국성환
(주소 : 동작구 상도동 381-1호 외 9필지)
 - ② 갑을건설 (주) 대표 박한상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2-5호)
- 마. 준공인가내역

- ① 대지 면적 : 5,680.10m²
- ② 건축 면적 : 1,445.12m²
- ③ 건 폐 율 : 25.44%
- ④ 용 적 륜 : 218.69%
- ⑤ 건축연면적 : 18,173.06m²

바. 건축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7~12층 3개동11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강동구고시 제200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37-8호외 1 필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480-1385~6), 부동산정보과 및 강일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월 11일
강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하수도	강동구 하일동 137-8,-45호	-	증)107	107		가래여울오수 중개펌프장 137- 8 : 8m ² 137-45 : 99m ²

나. 관계도면 : 생략(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부 | 동산정보과, 강일동사무소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7-10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5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과(☎ 731-11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종로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 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계	건 수	77	211,630	13	25,866	5	5,242	59	180,522	
	사업비(백만원)		297,183		34,664		12,550		249,969	
도로	건 수	63	179,792	8	11,170	5	5,242	50	163,380	
	사업비(백만원)		208,400		24,450		12,550		171,400	
공원	건 수	10	20,940	4	9,776			6	11,164	
	사업비(백만원)		61,020		9,059				51,961	
녹지	건 수	4	10,898	1	4,920			3	5,978	
	사업비(백만원)		27,763		1,155				26,608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 설 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 계 별	비 고 (관내번호)	
				폭 (m)	연장 (m)	면적 (m ²)	총계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관수동 144~120간 외2개노선	1	'07~'09	6	230	1,380	8,700		8,700		8,700		1	46
도로	통의동 140~35-34	2	'07~'09	6	155	930	1,800		1,800		1,800		1	67
도로	창성동 90~33-1	3	'07~'09	6	280	1,680	2,600	1,000	1,600		1,600		1	65
도로	익선동 5~34-8	4	'07~'09	4	160	640	2,950		2,950		2,950		1	47
도로	명륜동2가 115~156-2	5	'07~'09	6	150	900	2,000		2,000		2,000		1	16
도로	이화동 28~12	6	'07~'09	6	140	840	1,300		1,300		1,300		1	54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단 계 별	비 고 (관리번호)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송인1동 56-94~57-52	7	'07~'09	4	200	800	900		900		900		1	76
도로	부암동 175~ 신영동 118	8	'07~'09	8	500	4,000	4,200		4,200		4,200		1	31
도로	낙원동 173~ 봉익동 49	9	'10~'11	6	410	2,460	4,500		4,500		4,500		2-1	57
도로	송인1동 12-3~10-16	10	'10~'11	4	100	400	500		500		500		2-1	건고432 (63.7.1)
도로	창신동 151-2~143-55	11	'10~'11	6	34	204	1,450		1,450		1,450		2-1	74
도로	효자동 40-1~73-3	12	'10~'11	6	270	1,620	3,000		3,000		3,000		2-1	63
도로	송인2동 1162~1081	13	'10~'11	6	93	558	3,100		3,100	930	2,170		2-1	서고시2002-112 (02.4.8)
도로	명륜동2가 43~167	14	'12이후	6	130	780	1,200		1,200		1,200		2-2	15
도로	연지동 135~136	15	'12이후	4	180	720	2,000		2,000		2,000		2-2	19
도로	연지동 246~270	16	'12이후	6	190	1,140	2,500		2,500		2,500		2-2	20
도로	안국동 177~45	17	'12이후	6	100	600	1,000		1,000		1,000		2-2	25
도로	계동 44~원서동 92간외1개노선	18	'12이후	6	220	1,320	1,000		1,000		1,000		2-2	28
도로	관훈동 74~30	19	'12이후	4	200	800	2,600		2,600		2,600		2-2	35
도로	종로5가 76~ 연건동 87	20	'12이후	40	540	21,600	36,500		36,500	36,500			2-2	48
도로	충신동 1~ 이화동 9-208	21	'12이후	6	230	1,380	1,000		1,000		1,000		2-2	51
도로	가회동 31-19~30-10	22	'12이후	6	150	900	1,200		1,200		1,200		2-2	81
도로	송인동 66-70	23	'12이후	6	80	480	1,500		1,500		1,500		2-2	3
도로	창신3동 6-13~20-5	24	'12이후	6	110	660	600		600		600		2-2	79
도로	안국동 85~ 재동 109	25	'12이후	6	160	960	600		600		600		2-2	82
도로	창신1동 151-1~138-40	26	'12이후	6	265	1,590	1,400		1,400		1,400		2-2	74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단 계 별	비 고 (관리번호)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송인동 317~ 송인동 287	27	'12이후	6	230	1,380	2,400		2,400		2,400		2-2	7
도로	연지동 66-21~133	28	'12이후	6	420	2,520	9,700		9,700		9,700		2-2	84
도로	창신동 393~430외2	29	'12이후	8	810	6,480	5,400		5,400		5,400		2-2	11
도로	통인동 44-6~6	30	'12이후	6	200	1,200	2,000		2,000		2,000		2-2	64
도로	연지동 55-1~1-7	31	'12이후	6	240	1,440	2,800		2,800		2,800		2-2	83
도로	명륜동 16~43-1	32	'12이후	6	400	2,400	1,600		1,600		1,600		2-2	13
도로	운니동 10~63	33	'12이후	6	200	1,200	2,200		2,200		2,200		2-2	30
도로	송인동 76~106	34	'12이후	6	90	540	800		800		800		2-2	4
도로	송인동 220~226-2	35	'12이후	6	220	1,320	2,000		2,000		2,000		2-2	5
도로	송인동 32~56	36	'12이후	6	100	600	900		900		900		2-2	9
도로	명륜동1가 46-18~100-1	37	'12이후	8	330	2,640	2,500		2,500		2,500		2-2	18
도로	인사동 72~ 관훈동 144	38	'12이후	10~ 12	650	9,750	7,000		7,000		7,000		2-2	26
도로	궁정동 54~44	39	'12이후	8	73	584	500		500		500		2-2	37
도로	팔판동 162~ 삼청동 산2-1	40	'12이후	20	700	14,000	18,200		18,200	18,200	-		2-2	40
도로	옥인동 45-8~ 신교동 6-14	41	'12이후	12	140	1,680	2,000		2,000		2,000		2-2	41
도로	행촌동 1~ 홍파동 10	42	'12이후	6	170	1,020	600		600		600		2-2	43
도로	평동 20~36	43	'12이후	6	170	1,020	1,300		1,300		1,300		2-2	45
도로	통의동 102-1~35-87	44	'12이후	6	120	720	2,000		2,000		2,000		2-2	68
도로	사직동 144-2~92	45	'12이후	6	260	1,560	2,900		2,900		2,900		2-2	70
도로	청운동 52-25~57-28	46	'12이후	6	85	510	900		900		900		2-2	72
도로	송인2동 233-4~234-32	47	'12이후	4	150	600	1,200		1,200		1,200		2-2	77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단계 별	비고 (관리번호)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삼청동 33-13~ 가회동 35-169	48	'12이후	4	120	480	1,200		1,200		1,200		2-2	80
도로	가회동 33-1외 2개노선	49	'12이후	6	407	2,442	2,300		2,300		2,300		2-2	38
도로	승인1동 20-82~20-111	50	'12이후	6	140	840	1,500		1,500		1,500		2-2	78
도로	사직동 313-9~154	51	'12이후	4	250	1,000	1,000		1,000		1,000		2-2	71
도로	효자동 40~151외 3개노선	52	'12이후	6	790	4,740	4,000		4,000		4,000		2-2	34
도로	수송동 45~ 견지동 54	53	'12이후	6	130	780	2,100		2,100		2,100		2-2	29
도로	명륜3가동 222~107-1	54	'12이후	6	130	780	700		700		700		2-2	85
도로	무악동 46-1718~ 행촌동 209-35	55	'12이후	6	140	840	3,500		3,500		3,500		2-2	62
도로	세종로동 82-14~ 충신동 27-64	56	'12이후	20	2,800	56,000	23,100		23,100	23,100			2-2	1
도로	이화동 9-23~9-195	58	'12이후	8	50	400	500		500		500		2-2	56
도로	사직동 316-1~324	60	'12이후	4	75	300	500		500		500		2-2	69
도로	종로5,6가동 214-2~215-57	61	'12이후	8	80	640	1,800		1,800		1,800		2-2	73
도로	창신동 산6~ 창신동 산6	62	'12이후	10	150	1,500	1,000		1,000		1,000		2-2	119
도로	창신동 630-12~634	63	'12이후	4	148	592	300		300		300		2-2	120
도로	감사원~성균관대간	64	'12이후	6	892	5,352	5,600		5,600		5,600		2-2	22
도로	사직동 262~203	65	'12이후	4	150	600	300		300		300		2-2	44
공원	승인동 58-529	1	2007			4,395	5,623		5,623		5,623		1	승인근린공원
공원	부암동 251-8	2	2008			1,448	1,122		1,122		1,122		1	부암1근린공원
공원	부암동 336-2	3	2008			2,763	1,214		1,214		1,214		1	부암2근린공원
공원	부암동 303-1일부	4	2008			1,170	1,100		1,100		1,100		1	부암어린이공원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단 계 별	비 고 (관리번호)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방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공원	청진동 177-1	5	'11이후			3,341	11,308					11,308	2-2	중앙근린공원 (르메이에르)
공원	신문로1가 156	6	'11이후			1,147	8,584					8,584	2-2	광화문어린이공원
공원	신문로2가 145	7	'11이후			665	4,910					4,910	2-2	신문로어린이공원
공원	신문로2가 108-9	8	'11이후			358	1,205					1,205	2-2	새문인어린이공원
공원	인사동 210	9	'11이후			4,595	17,669					17,669	2-2	이문어린이공원 111
공원	인사동 172	10	'11이후			1,058	8,285					8,285	2-2	회복어린이공원 110
녹지	창신3동 13-32	1	2007			4,920	1,155		1,155		1,155		1	99
녹지	도렴동 115-4	2	'11이후			674	3,287					3,287	2-2	113
녹지	당주동 115	3	'11이후			4,502	14,225					14,225	2-2	114
녹지	신문로1가 34	4	'11이후			802	9,096					9,096	2-2	115

다. 관련도면 : 도면생략(종로구청 도시계획
과 비치도면과 같음)

◆ 동대문구공고 제200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원제4녹지조성)실시
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3) 및
제447호(2006.12.28)로 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97
호(1978.9.22) 및 동대문구고시 제136
호(2007.1.4)로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동대문구고시 제101호(2004.11.20) 및
제133호(2006.12.2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경원제4녹지 조성사업의 변경사항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0조와 같은법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
녹지과(☎ 2127-4397)에 비치하여 공고
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
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내 동대문구
청(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2007년 1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동 21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 사업의 명칭 : 경원제4녹지 조성

다. 사업변경내용

- 기존 : 5,452㎡
- 변경 : 5,575㎡
- 비고 : 녹지 편입지역 123㎡ 포함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
2007.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1	212-16	전	24.0	24.0	중랑구 면목동 1511번지 면목두산A 301-1103호	권성철				잔여지편입
2	213-8	전	8.0	8.0		동대문구				잔여지편입
3	213-16	전	5.0	5.0		동대문구				잔여지편입
4	209-18	도로	52.0	52.0		서울시				잔여지편입
5	209-17	도로	31.0	31.0		서울시				잔여지편입
6	214-7	대지	3.0	3.0	이문동 256-349	구자은	3/4			잔여지편입
					이문동 256-349	오부금	1/4			
계				123.0						

◆ 중랑구공고 제200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6-88(2007. 1.4)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8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신내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하고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88-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 2) 사업의 명칭 : 신내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389.7㎡(공공공지 1,136.6㎡, 사회복지시설 253.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490-3395~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신내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신내동 388-1	870	655.4	구거	주택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2	신내동 410-80	165	10.5	도로	도로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길 179				
3	신내동 415-1	10	10	대지	주택지	박선옥	중랑구 신내동 657 신내④ 903-209				
4	신내동 415-2	79	79	대지	주택지	권영집	중랑구 신내동 415-2				
5	신내동 415-4	63	63	대지	주택지	가순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14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203-1302	신내동 새마을금고	중랑구 신내동 456-3	근저당설정	
6	신내동 415-5	138	69	대지	주택지	신경식	서대문구 홍제동 312-221 동일④ 5차 703호	신내동 새마을금고	중랑구 신내동 456-3	근저당설정	
			69	대지	주택지	장미화	서대문구 홍제동 312-221 동일④ 5차 703호				
7	신내동 417-2	234	234	대지	주택지	김경연	동대문구 제기동 148-70				
8	신내동 417-5	26	26	전	경작지	권영집	중랑구 신내동 415-2				
9	신내동 417-31	14	14	대지	공장지	(주) 영풍산업	서초구 반포동 748-8 일대				
10	신내동 450-11	3,682	73.5	구거	도로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길 179				
11	신내동 801-1	1,354.6	86.3	도로	도로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길 17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명 : 신내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면적 및 수량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신내동 388-1	건물	세멘조	1층	52.8928	노인정	신 내 노인정	중랑구 신내동 388-1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면적 및 수량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	신내동 388-1	건물	세멘조	1층	23.1406	주택	최효심	중랑구 신내동 388-1				
		대문	철재 2×1.8		1식							
3	신내동 415	건물	세멘조	1층	39.6696	주택	정대봉	중랑구 신내동 415				
4	신내동 415	건물	세멘조	1층	46.2812	주택	한중화	중랑구 신내동 415				
		보일러실	세멘조 4×2		1식							
		대문	사시 2.8×1.5		1식							
		담장	콘크리트 2.8×7.8		1식							
		수목	앵두 등 2종		2주							
5	신내동 415	건물	세멘트	1층	52.8928	주택	강성지	중랑구 신내동 415				
		대문	사시 2.8×1.5		1식							
6	신내동 415	건물	세멘조	1층	52.8928	주택	정만욱	중랑구 신내동 415				
7	신내동 415-2	건물	연외조	1층	41.49	주택	권영집	중랑구 신내동 415-2				
		화장실	콘크리트 2×2		1식							
		수 도 계량기			1식							
		대문	목재 2×1.5									
		담장	콘크리트 3.5×1.7 9.3×2		1식							
8	신내동 415-4	건물	세멘조	1층	39.6696	주택	가순임	중랑구 신내동 415				
		보일러실	콘크리트 1×1		1식							
		수도			1식							
		대문	철재 2×1.5		1식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면적 및 수량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신내동 415-5	건물	경량철골조	1층	62.8	사시점	신경식	서대문구 홍제동 312-221 동일④	신내동 새마을금고	중랑구 신내동 456-3	근저당설정	
		건물	경량철골조	1층	9	창고	장미화	5차 703호				
10	신내동 417-2	웬스	EGI 41×2.4		1식		(주)영풍산업이용순	서초구 반포동 748-8번지 일대				
		담장	시멘트 11×4		1식							

◆ 중랑구공고 제2007-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4-96(2004.11.15)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5-42(2005.4.28)호로 기 인가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2-24번지(구 지번 : 면목동 162-34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오니, 본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계인은 의견서를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1일
중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위치 (당초지번)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공지	중랑구 면목동 162-22번지 (면목동 162-34)	2,293.4	증)289.7 감)289.7	2,293.4	'04.11.1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162-22번지 (면목동 162-34)	2,185.4	증)289.7 감)289.7	2,185.4	'04.11.15	- 지상 : 공공공지 - 지하 : 주차장 ※ 위치변경임
사회복지 시설	중랑구 면목동 162-22번지 (면목동 162-34)	760.0	감)289.7	470.3	'04.11.1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열람가능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인가일부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 변 경 : 인가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자.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490-3395~8)

- ◆ 도봉구공고 제2007-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최대개발규모)(변경)결정(안) 재열람
- 1. 쌍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창동 731-1,2호의 최대개발규모를 초과

- 하는 획지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최대개발규모)(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 가. 건 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최대개발규모)(변경)결정(안) 재열람
-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 2289-1814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최대개발규모)(변경)결정(안)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11	1,933.9	창동 731-1	1,933.9	획지계획
		273.7	창동 731-2	273.7	단독개발
변 경	11	1,933.9	창동 731-1	2,207.6	획지계획
		273.7	창동 731-2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변경)결정 조서

구분	가구·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11-1	도봉구 창동 731-1 일대	용도(불허권장)	1-	
			건폐율	60	
			용적률(기준/허용)	300/400	
			높 이	50	
			건축선	건축한계선 0~3m	

구분	가구·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변 경	11-1	도봉구 창동 731-1 일대	용도(불하·권장)	1-	변동없음
			건폐율	60	
			용적률(기준/허용)	300/400	
			높 이	50	
			건축선	건축한계선0~3m	창동731-1호 6m 도로변 대지내 건축한계선1.7m 신설: 도면표기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제어요소	확 보 면 적	적 용 구 역	비 고
기 정	창동 731-1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동없음
		공개공지	폭원5m, 45㎡이상	주요가각부 및 대형필지	
	창동 731-2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개공지	-	-	
변 경	창동 731-1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동없음
		공개공지	폭원5m, 45㎡이상	주요가각부 및 대형필지	
	창동 731-2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개공지	폭원5m, 45㎡이상	가각부 조성	

마. 열람기간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2289-1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07-11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수정가결에 따른 공람(도봉제2구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하여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1. 도봉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5.60㎡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435.60	-	13,435.60	100%	± 0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435.60	-13,435.60	0%	감 소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3,435.60	100%	증 가

2) 용도지역(변경)결정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도봉2동 95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435.6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13,435.6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017.91	7.58	
	도 로	133.90	1.00	현황도로
	도 로	275.58	2.05	확 폭(기부채납)
	공 원	608.43	4.53	소공원(기부채납)
택 지	소 계	12,417.69	92.42	
	택 지	12,417.69	92.42	조합, 분양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가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1	25	국지도로	일반도로	242	도봉동 633	도봉동 634-4	간고-198호 (71.4.7)	일부 정형화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72	도봉동 633	도봉동 97-1	간공-제8호 (68.1.23)	확폭 (6m×8m) 구역내1m
변경	소로	3	28	8	국지도로	일반도로	72	도봉동 633	도봉동 97-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일반도로	246	도봉동 97-1	도봉동 98-2	고시제 1993-69 (93.12.10)	확폭 및 정형화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일반도로	246	도봉동 97-1	도봉동 98-2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전	변경후	
신 설	공 원	소공원	도봉2동 98-2번지 일대	-	403.48	608.43	소로3-271은 소공원에 편입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 설	경로당, 독서실, 관리사무소	도봉2동 95-18번지 일대	147.71	지상 1층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m ²)	명 칭	면 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계	도봉제2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13,435.60		13,435.60	도봉2동 95번지 일대	109	-	-	109		
신설			택지1	12,417.69	도봉2동 95번지 일대						조합, 일반, 근린생활시설
			도로	409.48	도봉2동 633번지 일대						
			공원	608.43	도봉2동 98-2번지 일대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m ²)	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m ²)						
신규	택지	12,417.69	도봉 2동 95번지 일원	47,111.80	공동주택 및 근. 생	43.95	224.98	65m이하/지상9층~18층 평균 13.9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m ² 이하 ○ 전용면적 85m ²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구 분	평 형	전용면적(m ²)	세대수	비율(%)	
			85m ² 이하	33(A)	84.88	94	86.93	
				33(B)	84.71	79		
			85m ² 초과	44	112.32	26	13.07	
계				199	10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측(마들길) 25m 도로변 5m 공개공지 건축선지정. ○ 북측(진입도로) 8m 도로 확보후 3m 건축 한계선지정.					

-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개발 사업
-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약 69세대 증가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서의 비치 및 열람방법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3층 (☎ 2289-1806)
도봉제2동사무소(☎ 2289-1515)

◆ 도봉구공고 제2007-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6.30)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5-202호(2005.4.11)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5-29호(2005.5.11)로 인가고시 된 「쌍문동 497-12~495-86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쌍문동 497-12~495-86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쌍문동 497-12~495-86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6m, 연장116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 (방학동 720번지)
- 마. 사업기간 : 2005. 5. 11.~2006. 12. 28

◆ 서대문구공고 제2007-1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1. 서대문구고시 제2006-110호(2006.12.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봉원동 51-9외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330-170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
-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9외 1필지
- 다. 사업규모 : 104㎡
- 라.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보상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2007.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등 세목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아. 열 랐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330-1708)
- 자. 열 랐 기 간 : 게재일로부터 20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9	전	1,984	97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0	대한불교 태고종 봉원사 (조상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	가처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1	하천	798	7	서대문구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9	주택	목조	49,587	주택	이철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				

◆ 양천구공고 제2007-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6-5(2006.

1.1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된 신월동 915번지 4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5-4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명 칭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부지면적 : 1,577㎡
 - 건축규모 : 평면식

- 건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주차대수 : 52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양천구 신정동 321-4호
-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 2650-3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아리랑하우스 흥정희
3. 점용자의 주소 : 동작구 동작동 102-29 금강빌라 101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246㎡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아리랑하우스 흥 정 희
3. 점용자의 주소 : 동작구 동작동 102-29 금강빌라 101호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번지 한강
5. 점 용 척 수 : 선박 19척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위너스마리나 이양순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331㎡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위너스마리나 이양순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번지 한강
5. 점 용 척 수 : 선박 8척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르네상스 운상덕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972㎡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르네상스 운상덕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번지 한강
5. 점 용 척 수 : 선박 6척
(동력보트1, 무동력보트5)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파라다이스 운상덕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534㎡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파라다이스 운상덕
3. 점용자의 주소 : 동대문구 장안동 408-2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번지 한강
5. 점 용 척 수 : 선박 8척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여의도보트 박홍식
-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 5-95
-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
(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841㎡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 1. 하천의 명칭 : 한 강
- 2. 점용자 성명 : 여의도보트 박홍식
-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 5-95
-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
(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564 ㎡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운영을 위한 부대
시설(사무실,선박보관소 등)
-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여의도보트 박홍식
-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 5-95
-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
번지 한강
- 5. 점 용 척 수 : 선박 1척(동력보트)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 1. 하천의 명칭 : 한 강
- 2. 점용자 성명 : (주)다운인베스트먼트
하장수
-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반포동 1333
- 4. 점 용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333(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645 ㎡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주)다운인베스트먼트
하장수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반포동 1333
4. 점 용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333(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161 m²
6. 점 용 목 적 : 유선장운영을 위한 부대
시설(사무실,선박보관소 등)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투데이홀딩스(주) 김정렬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림빌딩 10층
4. 점 용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2 번지
(한강)
5. 점 용 면 적 : 1,625m²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설치
7. 점 용 기 간 : 2007. 1. 1.~2007.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한 강 사 업 본 부 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4척 (기선2척, 부선2척)	원호대교의 4개교량 배수관 정비공사 선박운항	2007. 01. 01.~ 2007. 02. 15.	2007. 01. .

사업소공고

◆ 종로소방서공고 제2007-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의 회계관계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

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종로소방서장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종로소방서 송인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정사각형) 1.8cm × 1.8cm		2007.1.5.	등 록	
<p>◆ 종로소방서공고 제2007-2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p>		<p>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월 11일 종 로 소 방 서 장</p>			
등록번호	업 중(분야)	상 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종로2007-1호	전문소방시설 공 사 업	교육시설 방재연구원	최 기 철 (4709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 현대빌딩 306	2007. 1. 5.
<p>※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7-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7-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p>		<p>29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였기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월 11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p>			
업 중(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적용법조항	
소방시설관리업 [제동대문 2007-01호] (2007.01.03)	주식회사 대연소방	박 광 봉 (610111-1*****)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04(☎ 922-822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p>※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02-2212-9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은평소방서공고 제2007-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은 평 소 방 서 장

등록번호(등록일자)	업종	상 호	대표자(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비고
제은평2007-1호 (2007.01.05)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무진방재 엔지니어링	서 중 희 (1971.04.08)	서울시 은평구녹번동 215 2층	

※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 02-384-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7-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강 남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등급 및 분야)	상 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강남 2007-1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	최 인 수 (660322-1*****)	강남구 역삼동 826-24 화인타워 13층	2007.01.05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
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7-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
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송 파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등급 및 분야)	상 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송파 2007-1호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주)동도엠이씨 인스파이어	안상철, 정창호 (110111-3*****)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1-8 자양빌딩 301호	2007.01.03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
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5항 위반혐의
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

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건설기술자)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된 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동현	770905-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9동 133-113 2/1	과태료 부과 등	(주)대능건설[전 : (주)대현]의 근무경력 허위신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제1의3호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의견제출
○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 총무과, 담당자 : 정채림)
○ 주 소 : 서울 중구 정동 28(정동길 18)(전화 : 02-2125-2522, 팩스 : 02-2125-2524, 전자우편주소 : moctjcr27@moct.go.kr)
○ 제출기한 : 2007년 01월 3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 정

- 2006.1.2일자 시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459호)의 “제7조2호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를 “제7조1호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한다.